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주지역
예비검속과 집단학살의 성격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조 정 희

2013년 2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주지역 예비검속과 집단학살의 성격

지도교수 조성윤

조정희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2월

조정희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3년 2월

The Characteristics of Preventive Detention and Massacre of Jeju Island just after Korean War

Jung-Hee Cho

(Supervised by Professor Sung-Youn Ch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Art

2013.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Sang-Cheol Lee, Prof. of Sociology

Thesis director, Young-Pyo Seo, Prof. of Sociology

Thesis director, Sung-Youn Cho, Prof. of Sociology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차 >

Abstract	i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주요 참고자료	6
II. 해방 후 제주지역의 요시찰제도와 예비검속	9
1. 제주4·3사건의 영향과 요시찰 제도	9
2. 한국전쟁 직후 예비검속의 부활과 시행	14
III. 제주 예비검속사건의 지역별 전개과정	21
1. 제주시 지역의 예비검속사건	21
2. 모슬포 지역의 예비검속사건	27
3. 서귀포 지역의 예비검속사건	32
IV. 제주 예비검속과 집단학살의 구조와 성격	39
1. 예비검속과 학살의 명령 계통	39
2. 등급분류의 기준과 자의성	44
3. 예비검속 대상자와 가해이유	52
4. 집단학살의 규모와 분포	60
V. 결론	67
참고 문헌	71

< 표 목차 >

<표 1> B·A 등급 예비검속자의 '범죄개요'(주요내용) -----	47
<표 2> 1950년 9월 4일 현재 제주지역 예비검속자 현황 -----	51
<표 3> 예비검속자 명부 중 '범죄개요'(주요내용) -----	55
<표 4> 제주시 지역 희생자의 연령별 분포 -----	61
<표 5> 제주시 지역 희생자의 성별 분포 -----	62
<표 6> 제주시 지역 희생자의 직업별 분포 -----	62
<표 7> 제주시 지역 희생자의 읍면별 분포 -----	62
<표 8> 모슬포 지역 희생자의 연령별 분포 -----	63
<표 9> 모슬포 지역 희생자의 성별 분포 -----	63
<표 10> 모슬포 지역 희생자의 직업별 분포 -----	64
<표 11> 모슬포 지역 희생자의 읍면별 분포 -----	64
<표 12> 서귀포 지역 희생자의 연령별 분포 -----	65
<표 13> 서귀포 지역 희생자의 성별 분포 -----	65
<표 14> 서귀포 지역 희생자의 직업별 분포 -----	65
<표 15> 서귀포 지역 희생자의 읍면별 분포 -----	66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Preventive Detention and Massacre of Jeju Island just after Korean War

The case of the preventive detention in Jeju area just after Korean war has an important meanings to analyze and understand the mass killing against civilians. The most cases of these mass murder has a lot of limitations to seek and restore of details of these cases because there are few official documents to prove the violence by the state including military and police authorities. Compared to this, it is easier to approach to the truth of the preventive detention in Jeju region because it has relatively many police documents.

This case is completed with the massacre through the detention and classification after arrest of the suspected civilians by the police stations and substations of Jeju region in accordance to the instructions of the police headquarter under the ministry of home affair. During these processes, the police mobilized the rightist groups like Korean youth Group(Deahan Cheongnyeon Dan), Northwest region Youth group(Seobuk Cheongnyeon Dan). The power of final decision for mass murder of these detainees was held by the Headquarter of Marine Corps in Jeju, because the military supervised the police affairs under Martial law.

This structure of Jeju preventive case, that is, the background, process, and result of this case has given us lots of help to understand the truth of civilian massacre just after Korean war. Furthermore, it gives us important clues to understand the whole paradigm of civilian mass killings in main land. Jeju case shows us that civilian mass murders had been executed organizedly and systematically by the instructions from the order line of government, military army and police. In the cases of land, the civilian massacres seems to have the

same paradigm as the Jeju island according to the related testimonies even though there are not enough official records to prove the whole structure and process of it. This means that Jeju preventive detention case was not individual and special one for this region, but a part of the universal structure of the whole country, so called cross correlations.

In general, the preventive detention case of Jeju region has not only the common characters of the other parts' cases of the whole country, but also regional characters. As the commons, it has : subjects were mainly the police, it happened as the pre-step or previous procedure for mass murders, the process of mass killing was arrest, detention and execution, and the objects were mostly leftists or suspects of leftist. While it also has its regional characters. That is to say, the objects were usually related to the 4 · 3 incident.

However, it also has regional characters. First, in the cases of land, the objects were mainly related to the Kukminbodoyeonmaeng(National confederation for preservation and guidance). Of course, Bodoyeonmaeng connected to the leftists and the related people to 4 · 3 incident also connected to the leftist group like People's Committee, Farmers Committee, Minaecheong(the Alliance for democratic and patriotic Youth) and Labor Party of South Korea. However, it has important meaning that the main objects of preventive detention of Jeju region were categorized and centralized on 4 · 3 incident. In Jeju region, Bodoyeonmaeng was not well organized like land, so it couldn't be the primary standard of distinction for the preliminary arrest. Therefore, the connection to 4 · 3 incident was the main measures to judge of personal thought and identity in the Jeju region.

The preventive detention of Jeju region in 1950 means the temporal and spacial extension of 4 · 3 incident. After all, this case shows us that state intended for the annihilation of specific groups related to the 4 · 3 incident. That is to say, it is the concrete expression of the intentionality of state violence and politicide.

Second, the mass killings process of Jeju inciden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mainland. At the mainland, the preventive detainees who were mainly Bodoyeonmaeng members were mostly mass murdered, while those of Jeju island were not only mass murdered through detention, evaluation and analysis, but also imprisoned for a long time or released. Furthermore, the conflict about legality or authority of preventive detention often happened among state organizations like the military,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which led the preventive detention and massacre. In reality, some policemen refused the instructions from government or military authority and set them free independently. Even though it could not be generalized as the phenomena of whole Jeju region, it shows the each organization related to the preventive detention relatively had their own autonomy. The Jeju island just after Korean war had characteristics of comparatively stable regional society. Therefore, the military and the police of Jeju region pursued their own autonomy without unilateral following to the central government's instructions.

Third, there were many accusations or squeals among residents themselves. Many preventive detainees were victimized with false accusations and mudslinging. This means that ideological confrontations and conflicts of this area after 4·3 incident changed to the personal revenge during Korean war. After all, the preventive detention of Jeju island was another war in regional society. On one hand, it was the war between state and individual ; on the other hand, it included another war between person versus person. This shows that the inner order of community had been destructed and personal emotion also destroyed since 4·3 incident.

Fourth, the victims of Jeju preventive detention have one meaningful characterist. In the aspect of the age and proportion of victims, 20's and 30's males comprise the highest proportion in every region of Island. This means that the most active youth generation was the main target of the preventive detention and murder accordance to the influence of 4·3 incident. Therefore,

the preventive detention case was the extension of 4·3 incident. Moreover, it means that the resistance movement represented by the 4·3 incident was connected to the sacrifice of the preventive detention case.

Keywords : accusation, community, state violence, classification, martial law, Kukminbodoyeonmaeng(National confederation for preservation and guidance), Northwest region Youth group(Seobuk Cheongnyeon Dan), preventive detention, annihilation, intentionality, politicide, Jeju 4·3 incident, mass killing, mass murder, massacre, Korean war, victim

I. 서론

1. 연구 목적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은 해방 후부터 전개된 좌우 정치세력의 정치적·이념적 갈등 속에서 이루어졌다. 제주4·3사건, 여순사건은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추진하던 미국과 우익정치세력의 정치적 프로그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익 정치세력은 비록 1948년 5·10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지만, 무엇보다 정부수립에 다양한 형태로 반대하는 광범위한 세력이나 집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수립을 계기로 다양한 측면에서 과거 좌익이나 좌익과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정책을 정비하고 구체화해 나갔다. 이러한 정책은 정치적·사회적 수준에서 국민보도연맹 결성, 법적·제도적 수준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군사적 수준에서 산간지역의 토벌작전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러한 거시적 정책은 과거 좌익세력이나 좌익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회통제나 감시체제의 수립과 연계되어 있었다. 이는 바로 경찰의 사찰(査察)제도나 예비검속(豫備檢束)으로 나타난다. 사찰과 예비검속은 상호 관련되어 있다. 사찰은 국가 정보당국이나 경찰 입장에서 의심되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제도였다. 예비검속은 의심되는 개인들의 행동이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금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사찰이나 예비검속은 일제시기 경찰제도에서 비롯되었으며, 해방 후에도 계속되었다. 국가 정보당국과 경찰은 정부수립 이전부터 이른바 좌익이나 불순분자로 지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찰이나 예비검속을 실시해 왔다. 해방 후 경찰이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예비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일제시기 경찰관행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주로 좌익세력이나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찰하거나 예비검속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한국전쟁 이후 예비검속이 부활하는 배경이 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 발생한 예비검속사건은 정부가 이른바 과거 좌익과 관련된 세력이나 '불순분자' 등이 북한에 동조할 위험이 있다는 의심 아래, 전국 각지에서 집단으로 구금·수용하였다가 불법적으로 살해한 사건이다. 제주 예비검속사건도 전쟁 발발 직후 정부의 요시찰인 및 불순분자에 대한 예비검속 명령에 따라, 제주지역에서 발생했던 집단학살 사건을 말한다. 제주지역 경찰서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내무부 치안국의 지시에 의거, 주민 중 일부를 예비검속하여 관할 경찰서·지서별로 집단수용하고, 심사와 등급분류를 실시했다. 주요 대상자는 정부당국이 제주4·3사건을 계기로 한라산 입산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입산자, 귀순자, 자수자 명부 등을 작성하고, 요시찰인으로 분류하여 일상적으로 사찰하고 관리해 오던 이들이었다. 예비검속자들은 과거 범죄경력(혐의)의 경중에 따라 D, C, B, A 4개 등급으로 분류되었고, 이들 중 범죄혐의가 무거운 D, C등급 대부분이 제주주둔 해병대사령부에 의해, 총살 암매장되거나 수장 학살되었다.

제주 예비검속사건은 한국전쟁 직후 발생한 국가폭력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¹⁾ 제주 예비검속사건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발생하였다.

1) 국가폭력은 대개 국가에 의한 조직된 폭력의 사용(organised use of force)으로 정의된다. 근대 이후 국가는 물리적 폭력의 합법적 사용을 독점해 왔다. 20세기 들어 폭력적인 국가는 근대 대량폭력(modern mass violence), 곧 홀로코스나 체노사이드를 비롯한 대량학살(massacre)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Michael Bothe, 2009, "Violence beyond the State-The International Law Approach", *A Journal on Civilization*, Vol. 2, Issue 1, p.41 ; Max Weber, 1948, *From Max Weber : Essays in Sociology*, Routledge, p.78 ; Mark Mazower, 2002, "Violence and the State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07, Issue 4, p.1159) 국가폭력의 개념은 정치적 수준에서부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준,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제도적·법적·이데올로기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걸쳐 있다. 조희연·조현연은 국가폭력을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정권연장을 위해서 반독재 운동가와 국민들에게 가해졌던 각종 국가 기구들의 폭력적 탄압이나 억압"으로 규정하였다. 이들은 국가폭력의 유형을 세 가지 기준에 의해 좀더 폭넓게 규정했는데, 첫째, 법률적 형태와 제도화된 관행, 둘째, 국가 주도의 국가폭력과 국가 묵인하의 사회적 폭력, 셋째, 물리적 폭력·법제도적 폭력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폭력 등이 그것이다. (조희연·조현연, 2002, 「국가폭력민주주의투쟁·희생에 대한 총론적 이해」, 조희연 편,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 읽는책) 김동춘은 전쟁의 측면에서, '주권국가가 자국민과 전쟁 상황에 있는 타국민을 상대로 벌인 집단학살 혹은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폭력행사'로 정의하였다. (김동춘, 「20세기 국가폭력과 과거청산」, 위의 책 참조) 국가폭력의 개념은 이처럼 광범하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제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구체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폭력의 개념을 주로 집단학살과 관련된 정치적·제도적·법적 수준에서 사용하려고 한다. 현재 집단학살과 관련된 국가폭력의 의미와 내용은 국가억압(state repression), 국가 승인폭력(state-sanctioned Violence), 국가후원 폭력(state-sponsored violence), 공적 폭력(public violence), 정치폭력(political violence), 집단폭력(collective violence), 체노사이드(genocide), 폴리티사이드(politicide), 데모사이드(democide) 등의 개념으로 구체화하거나 중첩,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

전쟁은 일반적으로 집단학살(genocidal killing)을 이끄는 심리적·사회적·정치적 조건을 만든다.²⁾ 특히 전쟁은 공격행위를 풀어주거나 해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쟁은 가해자들이 범죄를 감추면서 희생자들을 전쟁의 원인으로 여기게 하고, 희생자 집단을 적(enemy)으로 만든다.³⁾ 정부도 한국전쟁이라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이른바 과거 좌익세력이나 한라산 무장세력과 관련있는 사람들을 적국의 국민(enemy nation)으로 분류하고 전국적으로 예비검속하여 집단 살해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 예비검속사건은 전쟁 상황에서 국가폭력이 갖는 야만성과 조직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가 전쟁 상황에서 위협성이 있다는 의심만으로 자기 국민을 적국의 국민으로 범주화하여 집단살해 했다는 점에서 국가폭력의 야만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제주 예비검속사건은 단순히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우발적인 살해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체노사이드나 정치적 체노사이드 학살(politicides killings)은 결코 우발적이거나 개인적 행위가 아니며, 국가당국의 명백한 또는 암묵적인 방향에 따라 수행된다.⁴⁾ 예비검속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정부의 체계적인 지휘와 명령 계통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집행되었다는 점에서 국가폭력의 조직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제주 예비검속사건은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국가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체노사이드, 특히 정치적 체노사이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Hank Johnston, 2012, "State Violence and Oppositional Protest in High-Capacity Authoritarian Regim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and Violence*, Vol. 6(1) ; Leonhard Praeg, 2011, "Genocide, or the Aporia of Collective Violence", *At the Interface/Probing the Boundaries*, Vol. 75 ; Francisco Herreros, 2006, "'The Full Weight of the State' : The Logic of Random State-Sanctioned Violenc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3, No. 6 ; Thies Cameron G., 2006(Dec.), "Public Violence and State Building in Central America",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39, No. 10 ; Dominic M. Beggan, 2006(Dec.), "State Repression and Political Violence : Insurgency in Northern Ire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World Peace*, Vol. 23, No. 4 ; Robert H. Holden, 1996(May), "Constructing the Limits of State Violence in Central America : Toward a New Research Agenda",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28, No. 2 ; Carole Nagengast, 1994, "Violence, Terror, and the Crisis of the Stat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23, Issue 1.

2) Helen Fein, 2000(April~June), "Civil Wars and Genocide : Paths and Circles", *Human Rights Review*, p.49.

3) Paul Bartrop,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War and genocide in the Twentieth Century : A Consideration",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Vol. 4, No. 4, p.528.

4) Barbara Harff, 2003(Feb.), "No Lessons Learned from the Holocaust? Assessing Risks of Genocide and Political Mass Murder since 1955",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7, No.1, p.58.

럼멜은 제노사이드와 정치적 제노사이드를 포괄하는 보다 광범한 대량학살의 개념으로 데모사이드(democide)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정부에 의한 의도적 살해로 정의된다.⁵⁾ 제노사이드의 개념과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지만,⁶⁾ 정치적·이념적 수준에서 특정 집단의 절멸을 목표로 할 경우, 정치적 제노사이드(politicide)의 성격을 띠게 된다. 제노사이드와 정치적 집단학살의 차이는 집단 구성원들의 정체성에서 비롯된다. 제노사이드나 정치적 제노사이드 모두 국가의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다만 제노사이드는 희생자 집단이 주로 공동체의 성격, 예를 들면, 인종이나 종교, 민족 등의 측면에서 규정된다. 정치적 제노사이드는 희생자 집단이 주로 정권이나 지배집단에 대한 위계적 위치나 정치적 반대의 측면에서 규정된다.⁷⁾

제노사이드나 정치적 제노사이드에는 가해자가 표적집단(target group)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다.⁸⁾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제주 예비검속사건은 국가가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특정 집단의 제거를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집단학살 또는 정치적 제노사이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 예비검속사건은 국가 입장에서 볼 때, 한국전쟁 발발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이른바 국가에 정치적으로 위협한 세력으로 분류된 집단, 제주4·3사건과

5) R. J. Rummel, 1995(Mar.), "Democracy, Power, Genocide, and Mass Murder",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9, No. 1, pp.3~4.

6) 제노사이드는 폴란드 법학자 라파엘 렘킨(Raphael Lemkin)이 집단살해를 설명하기 위해 1943년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서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유엔협약(1948) 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노사이드란 "민족적,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에는 (a)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살해, (b) 집단 구성원에 대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가해, (c) 집단의 전부나 일부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그들 생활조건에 대한 고의적인 가해, (d) 집단 내의 출생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 (e) 집단 내 어린이의 다른 집단으로의 강제 이송 등이 포함된다.(유엔 제노사이드 협약에 관한 전체 원문은 다음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http://www.icrc.org/ihl.nsf/FULL/357?OpenDocument>) 이러한 제노사이드의 개념은 주로 법률적 측면에서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용어나 표현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일부에서는 제노사이드의 개념이나 의미를 학살범죄(atrocity crimes)의 범주 안에서 반인륜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war crimes), 인종청소(ethnic cleansing) 등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제노사이드는 한 집단에 대한 물리적 파괴만이 아니라 집단 정체성(group identity)의 파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rnesto Verdeja, 2012(June), "The Political Science of Genocide : Outlines of an Emerging Research Agenda",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10, No. 2, p.309.

7) 정치적 제노사이드는 국가에 대한 희생자집단의 위계적 위치나 지배집단의 정책목표에 따라 보복적·억압적·혁명적·해계모니적 범주로 구분되기도 한다. Barbara Harff and Ted Robert Gurr, 1988(Sep.), "Toward Empirical Theory of Genocides and Politicides :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Cases since 1945",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2, No. 3, p.360-363.

8) Matthew Krain, 2005(Sep.), "International Intervention and the Severity of Genocides and Politicid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9, No. 3, p.364.

관련된 특정한 집단의 물리적 제거를 목표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집단학살이었다.

지금까지 제주지역 또는 육지의 예비검속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예비검속 일반의 역사적 배경, 예비검속과 학살의 관계, 예비검속권의 법적 구조 등을 일정하게 해명함으로써 한국전쟁 직후 발생한 예비검속사건의 이해수준을 확장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⁹⁾ 다만, 이들 연구는 예비검속사건의 구체적인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거나 분석하지 못한 관계로 사건의 실체와 전체상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안고 있다. 기존 연구는 특히 제주 예비검속사건에서 나타나는 국가폭력의 성격, 곧 국가폭력의 조직성과 계획성, 그리고 정치적 제노사이드로서의 특징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¹⁰⁾ 여기에는 무엇보다 예비검속사건과 관련된 국가의 공식기록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지 못한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¹¹⁾

이 논문의 목적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예비검속사건의 발생배경과 지역별 전개과정, 구조와 성격 등을 분석하여 사건의 전체상을 복원하고, 나아가 국가폭력·정치적 제노사이드로서 예비검속사건의 특성을 추출하는데 있다. 한국전쟁 직후 육지에서도 예비검속사건이 발생했으나,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에 비해 제주지역은 상대적으로 예비검속 관련 경찰기록이 많이 남아있어 예비검속사건의 전체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조건을 일정하게 갖추고 있다.

본 연구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서』에 활용한 경찰의 예비검속관련 공문서, 그리고 사건관련 피해 유족들의 증언을 적극 활용하여 제주지역 예비검속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단순히 제주지역 예비검

9) 강성현, 2012, 『한국 사상통제기제의 역사적 형성과 ‘보도연맹사건’, 1925-50』,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오병두, 2010, 「국민보도연맹과 예비검속 - 제노사이드(Genocide)의 관점에서-」, 『민주법학』 43 ; 정병준, 2004, 「한국전쟁 초기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학살사건의 배경과 구조」, 『역사와 현실』 54.

10) 오병두는 국민보도연맹사건과 예비검속을 제노사이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주로 「제노사이드 협약」에 규정된 개념의 적용 문제나 재발방지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오병두, 앞의 논문 참조.

11) 경찰의 예비검속 기록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연구자들이 활용하지 못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들어 진실화해위원회의 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경찰의 예비검속 관련 문서를 입수하여 제주지역 예비검속사건을 진실규명하면서 관련 자료가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제주예비검속사건(첫알오름) 진실규명결정서』(2007), 『제주예비검속사건(제주시·서귀포시) 진실규명결정서』(2010) 참조.

속사건만이 아니라 한국전쟁 직후 전국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었던 예비검속사건의 보편적 성격을 파악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 해방직후부터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1950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 가운데서도 예비검속사건이 발생했던 1950년 6월~8월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지역별로는 제주 전역에서 발생했던 예비검속사건 중, 대규모 집단학살이 발생한 제주·모슬포·서귀포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산포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예비검속이 실시되었으나, 대량 집단학살이 발생하지 않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¹²⁾

2. 주요 참고자료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활용한 자료는 경찰의 예비검속관련 공문서와 사건관련 피해 유족들의 증언이다. 경찰의 예비검속관련 공문서는 예비검속과 학살의 지휘 명령 계통, 예비검속대상자의 심사 및 등급분류, 예비검속과 가해이유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사건관련 피해 유족들의 증언은 예비검속 및 연행 과정, 그리고 집단수용 상황을 확인하는데 주로 활용하였다.

1) 예비검속관련 경찰 공문서

- 자료명 :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
- 생산기관 : 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 생산년도 : 1950~1956
- 소장처 : 국가기록원(관리번호 : DA0792122)
- 주요내용 : 내무부 치안국과 제주경찰국, 각 지역 경찰서(서귀포·모슬포·성

12) 성산포경찰서장 문형순은 해병대가 "예비검속자 총살집행 의뢰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 예비검속자들을 학살하려고 하자, 부당함을 주장하며 해병대의 명령을 거부하였다. 성산포경찰서는 DC등급 총 81명 가운데 6명만을 군에 인계함으로써 예비검속자 대량학살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 200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IV. 피해상황), 433~434쪽 참조.

산포·제주경찰서), 계엄사령부 등에서 명령·지시·보고한 예비검속 관련 공문서철이다. 본 자료는 제주지역 예비검속과 관련된 국가기관, 곧 당시 군·경찰·검찰의 활동내용 및 각 기관 사이의 지휘·명령 관계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또한 경찰의 예비검속자의 등급별 분류와 해병대사령부로의 송치 등 사건의 가해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자료에는 예비검속 관련 공문 외에 각 경찰서별로 작성된 「예비검속자명부」, 「총살자 및 동 가족 명부」, 「좌익계열실태조사표 - 형살자 명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2) 사건 관련 피해 유족 증언

본 연구에 사용된 증언 자료는 크게 세 종류이다.

첫째, 2001~2002년 기간 동안 제주4·3위원회가 4·3사건 희생자 유족 및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증언 채록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비록 4·3사건 피해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제주 예비검속사건 피해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 자료는 「제주4·3사건 증언자료집」(1~7권, 미간행)으로 제작되어 제주4·3평화기념관(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다.

둘째, 2004~2005년 기간 동안 제주4·3연구소가 4·3사건 희생자 유족 및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증언 채록한 자료이다. 이 자료도 4·3사건 피해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증언 채록한 자료이지만, 예비검속 관련 증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현재 「제주4·3사건 1000인 증언채록자료집」(미간행)으로 제작되어 제주4·3평화기념관(아카이브실)에 소장되어 있다.

셋째, 2006~2010년 기간 동안 진실화해위원회가 제주지역 예비검속사건 희생자 유족 및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로서 주요한 내용은 『제주예비검속사건(섯알오름) 진실규명결정서』, 『제주예비검속사건(제주시·서귀포시) 진실규명결정서』에 수록되어 있다.

본 논문의 각주에서는 증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 증언자 이름과 함께 증언 날짜를 같이 명시하였다. 증언 자료의 출처는 증언 날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01~2002년 시기의 증언은 『제주4·3사건 증언자료집』, 2004~2005년 시기의 증언은 『제주4·3사건 1000인 증언채록자료집』, 그리고 2006~2010년 시기의 증언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제주예비검속사건 진실규명결정서』(섯알오름·제주시·

서귀포시)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각주에서는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모든 증언마다 출처를 제시하는 것은 생략하였다.

Ⅱ. 해방 후 제주지역의 요시찰제도와 예비검속

1. 제주4·3사건의 영향과 요시찰 제도

해방 후 새로운 국가건설을 둘러싼 좌우대립과 갈등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전면화되었다. 제주도에서는 단선·단정반대를 슬로건으로 하는 4·3사건, 육지에서는 여순사건으로 나타났다. 1948년 4월 3일 제주에서는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세력이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중지, 단선·단정반대와 통일정부 수립 등을 주장하며 관공서와 우익단체 등을 공격했다. 이들은 한라산을 비롯한 산악지역을 거점으로 빨치산 투쟁을 전개했으며, 결과적으로 제주도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5·10선거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제주4·3사건이나 이후의 여순사건은 정부의 좌익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정부당국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 과거 좌익세력 및 반체제 세력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정부와 우익 정치세력은 당시 남한을 “비상국가”, “전시하의 국가”로서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비상국가 체제는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좌익소탕을 추진하고 국내 정치안정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일종의 좌익소탕 국가체제였다.¹³⁾ 정부나 우익입장에서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은 남한에서 좌익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이들을 통제하거나 제거할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우익은 제주4·3사건 및 여순사건의 숙군을 ‘사상적으로 애매한 자들에 대해 그 정체를 포착’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하였다.¹⁴⁾

정부가 좌익을 국민의 적으로 규정하고 제거하는 소탕하는 일종의 ‘국가안의 전쟁’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국가수립 후에도 내전과 극단적 정치갈등이 계속되면서 국가 탄생의 산파인 전쟁은 “다른 방식으로 지속되어” 국가의 이후 활동에 내재화되었다. 국가 입장에서 내부의 반란이나 저항으로 지배계

13) 김무용, 2010, 「정부수립 전후 시기 국민형성의 동종화와 정치학살의 담론 발전」, 『아세아연구』 제53권 4호(통권 142호).

14) 『연합신문』, 1949.5.26.

급의 권력기반이 취약해지는 조건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의 적은 그 실제 위협 이상으로 과대 포장되었으며, 국가는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다.¹⁵⁾

정부당국의 좌익에 대한 전쟁은 제도적·법률적 수준의 통제정책으로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1949년 6월 결성된 국민보도연맹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정부는 국민보도연맹을 바탕으로 과거 좌익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전향시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려고 했다. 보도연맹 가입은 “과거를 청산”하고 “충성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생·갱생의 길”이었다.¹⁶⁾ 국가 입장에서 보도연맹 결성은 과거 좌익세력을 사상적으로 훈육하여 재생산하는 사상전쟁의 일환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사상전향 작업과 함께 법률적, 물리적 조치도 취해 나갔다. 정부는 1949년 10월 들어 남로당과 전평을 비롯한 133개 정당·단체를 등록취소 하였다.¹⁷⁾ 김효석 내무장관은 반역도당을 근절시키기 위해 일대 소탕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하였다.¹⁸⁾ 정부의 좌익통제정책은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 제정으로도 나타났다.

이러한 ‘국가 안의 전쟁’은 정부의 좌익통제 정책이 다양한 측면에서 입법화·제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좌익인물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체제, 곧 사찰제도를 확립하여 운영하였다.¹⁹⁾ 정부와 경찰당국은 과거 좌익세력들에 대한 각종 「요시찰명부(要視察名簿)」를 만들어 이들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감시하였다. 경찰은 이미 정부수립 이전부터 개인이나 정치사회단체, 특히 청년층 우범분자의 동향을 사찰하기 위해 요시찰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 왔다.²⁰⁾ 군

15) 미셸 푸코, 1997, 박정자 옮김,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동문선 ; 김동춘, 2011(봄), 「냉전, 반공주의 질서와 한국의 전쟁정치 - 국가폭력의 행사와 법치의 한계」, 『경제와 사회』 봄호(통권 제89호).

16) 『연합신문』, 1949.5.13 ; 『동아일보』, 1949.10.29 ; 『자유신문』, 1948.11.22 ; 『호남신문』, 1949.12.2.

17) 『서울신문』·『국도신문』, 1949.10.19.

18) 『동아일보』, 1949.10.26.

19) 사찰(査察)은 일본에서 근대경찰이 성립하면서부터 주민 일반을 감시·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특히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장신, 2003, 「일제하의 요시찰과 『倭政時代人物史料』」, 『역사문제연구』 11호 ; 사찰경찰은 반국가적 운동을 취체의 대상으로 하는 경찰작용을 말한다. 즉 민주공화제인 대한민국의 국체에 대한 안전보위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폭동 소요 등에 대하여는 물론 국체를 부인 파괴 변혁하려는 일체의 불순요소 등에 대처하고자 행하여지는 일련의 조직적인 경찰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논술한다면 다음과 같다. 1. 그 사명은 국체의 안전보위와 공공질서의 유지에 있다. 2. 그 대상은 소요 및 국체를 부인 파괴 변혁하려는 일체의 불순요소 등에 있다. 3. 그 수단은 일련의 조직적인 경찰활동이다. 유사원, 1955, 『사찰경찰제요』, 내무부 치안국 특수정보과, 234~249쪽.

20) 『조선일보』, 1947.4.11 ; 비록 나중이지만 1951년 10월 9일 제정된 예규 ‘요시찰인명부 비치에 관한

당국에서는 제주4·3사건, 여순사건을 거치면서 「반란관계 수형자 명부」를 작성했다.²¹⁾ 경찰은 또 좌익계열 자수기간에 자수하지 않은 문화인들의 명부를 작성하여 신문사·잡지사·문화단체 등에 배포하고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²²⁾ 특히 전남지역 경찰은 이른바 치안확보 차원에서, 좌익소탕 과정에서 도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피자 명부」 및 그들 가족사진도 작성하여 관리하였다.²³⁾ 문교부도 장관의 지시로 고등교육국에서 “숙청당한 교사의 명부를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²⁴⁾ 정부와 군경당국의 요시찰 명부 작성과 관리는 좌익 또는 좌익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감시체제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고 일상화되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제주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제주지역에서 요시찰 제도의 대상은 주로 4·3사건과 관련된다.²⁵⁾ 미군정 당국은 1948년 4·3사건이 일어나자, 처음에는 경찰력을 증가시켜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으나, 상황이 악화되자 곧 국방경비대 9연대를 파견하였다. 이어 1948년 8월 15일 남한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정부는 10월에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11월에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계엄령 선포 이후 중산간 마을에 대한 강경 진압작전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학살당하거나 피해를 입었다.²⁶⁾ 정부는 12월 말에, 진압부대를 9연대에서 2연대로 교체하고 토벌작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정부의 강경한 진압작전은 1949년 들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949년 3월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토벌작전을 진압과 선무 병용작전으로 전

건’에서도 경찰이 좌익계열 각 정당단체의 간부 및 지도자, 좌익분자, 좌익사상자, 불순분자 및 자수귀순자, 전향자, 기소유예자 등 요시찰인의 동정을 사찰, 감시하고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규 「요시찰인 명부비치에 관한 건」(內治情庶 제24307호), 1951.10.9.

21) 『호남신문』, 1949.2.17.

22) 『자유신문』, 1949.11.6.

23) 『호남신문』, 1949.7.15.

24) 『한성일보』, 1949.2.3 ; 『시정일보』 제3호(1949.2.3), 87~89쪽.

25) 사찰경찰로서 주의해야 할 각종 기념일을 정리해 놓은 <사찰관계 주의일 표>에는 ‘4·3폭동사건발생일’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은 4·3사건을 사찰경찰의 운영상 주의가 필요한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281년 4월 3일 제주도 일대에서 발생된 좌익의 대거 무장폭동사건 발생일이다. 이 사건은 2·7사건에 계속하여 5·10선거 반대를 목적으로 동년 4월 3일 오전 2시 미명의 틈을 타서 일제 무장 봉기로 도내 경찰관서를 습격하고 무기를 약탈하는 동시 경찰관은 물론 일반 양민을 반동분자라고 무조건 납치 살해한 후 한라산에 입산 거점을 확보하여 동년 5월 25일까지 대거 출몰한 사건이었다. 북한괴집은 이를 보고 제주도 인민무장항쟁이라고 칭하고 있다.’ 유사원, 앞의 책, 234~249쪽.

26) 제주4·3위원회, 앞의 책(IV. 피해상황) 참조.

환했다. 특히 당시 유재홍 사령관은 한라산에 피신해 있던 사람들이 귀순하면 모두 용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하산하여 정착하게 되었다.²⁷⁾ 이러한 정책의 결과, 1949년 5월 10일에는 재선거를 실시했으며, 6월에는 빨치산 지도자 이덕구가 사살되었다. 따라서 1949년 6월 이후에는 한라산을 거점으로 하는 빨치산 세력은 거의 소멸되었으며 더 이상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웠다.²⁸⁾

정부와 군경당국은 이 시기부터 과거 제주4·3사건 관련자를 비롯하여 한라산에 입산 또는 피신했다 돌아온 귀순자 및 그 가족들의 동향을 사찰하고 집중 관리하였다.²⁹⁾ 정부나 군경당국은 이들을 이른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불순분자로 분류하여 요시찰 대상에 포함시켜 감시했는데, 이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 예비검속사건의 배경이 되었다. 제주지역에서 이들 '4·3사건 관련자'들은 크게 보면, 국민보도연맹 가입 대상자들이었다. 당시 제주지역 경찰은 육지와 마찬가지로 4·3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보도연맹을 조직하려고 하였다. 1949년 11월 27일 현재, 전국 경찰국에서 내무부에 보고한 전향자 수를 보면, 제주지역에서도 5,283명이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있었다.³⁰⁾ 제주4·3위원회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보도연맹은 인민위원회 간부, 3·1사건 관련자, 4·3사건 관련자 등으로, 과거 좌익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었다.³¹⁾ 제주지역 보도연맹은 제주·서귀포·모슬포·성산포 4개 경찰서 관할 지역별로 본부가 결성되었으며, 그 아래 각 지서별로 관할 지부가 있었다. 경찰지서는 리 단위로 조직된 보도연맹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였으며, 여기에는 사찰계 경찰들이 적극 관여하였다.³²⁾ 이러한 사실을 보면, 제주지역 경찰도 육지와 마찬가지로 4·3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보도연맹원으로 조직하여 통제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27) 『경향신문』, 1949.4.26 ; 『조선일보』, 1949.5.20.

28)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534~535쪽.

29) 제주도경찰국 사찰과 근무를 했던 고OO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6·25당시에는 사찰과 내에 사찰분실이 있었습니다. 분실이 소위 말하자면 특수정보원이었습니다. 사찰분실에서 다 관할했습니다. 입산자, 귀순자 조사하고, 조사 후 등급을 매겨서 현병대 넘기는 일이 분실, 분실장 담당입니다.” 고OO 증언 (2006.9.22).

30) 『서울신문』, 1949.12.2.

31)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424쪽.

32) 위의 책, 423~424쪽.

이러한 사실은 당시 경찰기록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다만, 국민보도연맹과 예비검속사건의 상호 관계를 비교하면, 제주지역에서는 육지와는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 당시 경찰의 공식기록을 볼 때, 제주지역의 좌익관련자 또는 4·3사건 관련자들은 육지처럼,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비교적 단일한 형태로 범주화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주지역에서 예비검속의 주요 범주나 대상도 국민보도연맹원이 아니라 제주4·3사건 관련자들이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경찰이 작성한 「예비검속자명부」의 ‘범죄개요’ 항목에는 과거 인민위원회나 제주4·3사건 관련 활동 내용이 대부분이며, 보도연맹에 대한 기술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곧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주지역 경찰은 예비검속의 대상을 국민보도연맹원이 아닌 ‘4·3사건 관련자’들로 범주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4·3사건의 장기화가 제주사회의 정치적 지형에 미친 영향과 함께 육지와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지역 경찰은 주로 4·3사건 관련자를 대상으로 요시찰인 명부³³⁾, 자수자·귀순자 명부, 도피자 명부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 왔으며,³⁴⁾ 이는 전쟁 후 예비검속자 명부의 주요한 기초자료가 되었다. 경찰출신 정OO는, “예비검속의 주요 대상자는 과거 인민위원회·남로당 계통, 한라산에 입산했다가 귀순 후 폭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자수서를 작성한 사람 등이었다”고 증언하였다.³⁵⁾ 경찰출신 정OO도 “예비검속자들은 남로당 가입이나 사상에 관계된 사람들로서, 요시찰인으로 감시되던 사람”이라고 증언하였다.³⁶⁾ 경찰출신 김OO은, “과거 좌익계열에 협조했거나, 당시 도피자라고 불렸던 한라산에 입산한 무장대, 무장대의 가족, 무장대와 내통할 염려가 있는 사람들 6·25발발 후 재검속”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4·3사건 관련 도피자 명부에 기재된 사람이 한국전쟁 발발 이후

33) 조병욱 경무부장은 1947년 4월 10일 남조선 각 관구 경찰청장 및 제주도감찰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통고문을 보내어 테러행위의 엄중단속을 지시하였다. 1) 개인이나 정치 또는 사회단체 여하를 막론하고 특히 청년층 우범분자의 동향을 사찰하며 필요에 의하여는 요시찰명부를 작성하여 미행도 할 것, 2) 전기단체와 때때로 만나 지도적 간담을 할 것, 3) 테러발생시는 신속 적절한 경찰행동을 취하되 직접행동자는 물론 그 배후관계 즉 주모자 주동자의 수사규명에 노력하여 발본색원적 총검거를 단행할 것. 『조선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 1947.4.11.

34) 교OO 증언(2002.1.31) ; 송OO 증언(2002.1.23) ; 김OO 증언(2001.11.19) ; 오OO 증언(2002.2.6) ; 김OO 증언(2006.9.20) ; 교OO 증언(2006.9.22) ; 「도피자명부 작성에 관한 건-대 10월 13일부 濟警査 1840호」(제2구 警査 제247호, 1948.10.28),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35) 정OO 증언(2007.8.16).

36) 정OO 증언(2007.6.21).

예비검속되어 희생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³⁷⁾

결국 정부와 경찰당국이 제주4·3사건 진압 이후, 사건 관련자 및 그 가족들을 요시찰인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해 왔으며, 이들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예비검속의 주요한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가 '위험한 국민', 이른바 불순분자들을 조직적·체계적으로 감시해 왔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비검속사건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집단학살사건, 곧 준비된 국가폭력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2. 한국전쟁 직후 예비검속의 부활과 시행

예비검속은 일제가 전시체제 시기에 이른바 범죄예방을 구실로 실시한 '조선정치범예방구금규칙'(1941.5.5)에서 비롯되었다.³⁸⁾ 이 규칙의 근원은 1925년 4-5월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서 성립된 치안유지법에 있다. 이 법은 형사범의 철칙인 행위 '결과'를 두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목적'을 판단해 처벌하는, '사상처벌법'이었다. 이후 치안유지법은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사상처벌법'에서 '전시법'으로 발전해갔으며, 예방구금 관련 법령은 1941년 2월 12일 제령 제8호로 제정되어 3월 10일부터 실시한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총독부령 제48호)', 1944년 9월 22일 개정된 '조선사상범예방구금규칙'(조선총독부령 제329호) 등으로 나타났다.³⁹⁾ 이 법은 해방 후 대표적인 일제 악법으로 규정되어 1945년 10월 9일 군정

37) 모슬포경찰서 사찰계가 작성한 「도피자 명부」(1948)에 올라있던 강상호(안덕 감산)·김대완(대정 영락)·변봉흠(대정 신도) 등 3명은 예비검속대상에 포함되어 희생되었다. 「도피자명부 작성에 관한 건-대 10월 13일부 濟警査 1840호」(제2구 警査 제247호, 1948.10.28),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38) '조선사상범예방구금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는 예방구금의 대상이 치안유지법 수형자 및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보호관찰하에 있는 자 중 재범의 우려가 현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제2~13조에 따르면, 예방구금의 청구자는 지방재판소 검사국의 검사였으며, 청구를 위해 예방구금위원회에 의견을 구하고, 그 취지를 형무소장 또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통지한다. 예방구금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방구금소장은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며, 검사는 신속하게 그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특히, 제16조 구금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예방구금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예방구금소로 호송시킨다. 제26~29조는 수용자의 처우 규정이다. 수용자는 제1급, 2급, 3급으로 누진 처우하며, 3급부터 순차로 진급하게 한다. 진급은 사상 상태를 심사하여 정하는 데, 상급에 속한 자가 그 계급에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급을 저하시킬 수 있다. 조선사상범예방구금규칙(조선총독부령 제329호, 1944.9.22).

법령 제11호에 의해 폐지되었으며,⁴⁰⁾ 자연스럽게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비검속은 공식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제도였다.

미군정 시기나 정부 수립 후에 경찰에서 검거, 구금 또는 구속을 의미하는 검속이라는 개념은 사용되었으나, 예비검속제도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47년 8월 13일 수도경찰청은, 당시 좌익간부들의 검거는 범죄사실이 이유이며, 예비검속은 아니라고 밝혔으며, 장택상 수도경찰청장도 “예비검속이라는 것은 현 경찰에 없다”고 언명하였다.⁴¹⁾ 그러나 예비검속 제도가 부활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1948년 11월 전국애국단체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⁴²⁾ 「비상시국대책에 대한 결정서」에서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국가보안법에 공산계열에 대한 예비검속제도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⁴³⁾ 경찰에서도 예비검속의 불법적인 관행이 남아 있었다. 1948년 11월, 전남 관할 제8관구 경찰청장은 일체 검색과 예비검속을 실시했으며, 여기에는 양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제8관구경찰청장 김병완은 “작금의 비상사태에 비추어 폭도의 준동을 미연에 방

39)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방구금 관계 조항은 보호관찰에 대한 조항과 함께 1934년 ‘치안유지법중개정법률안’에 포함되었다. 당시 의회는 보호관찰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예방구금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1935년 정부와 사법성 스스로가 논란을 우려해 예방구금 조항을 삭제하고 보호관찰 조항만 포함해 치안유지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의회는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고, 1937년에 보호관찰에 대한 입법만 분리되어 ‘사상범보호관찰법’으로 통과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예방구금이 포함된 치안유지법 개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본보다 우선적으로 제령의 형식을 통해 별도의 예방구금 입법을 시도했다. 그것이 바로 1941년 2월 12일 제령 제8호로 제정되어 3월 10일부터 실시한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총독부령 제48호)’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조선총독부 예방구금소관제(쇼와 16년 칙령 제166호), 조선총독부 예방구금위원회관제(쇼와 16년 칙령 제167호),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시행규칙(쇼와 16년 부령 제52호) 등 수많은 예방구금관계법규들이 완비되어 갔다. 1941년 2월 전면 개정된 새로운 치안유지법(쇼와 16년 법률 제54호)이 의회를 통과해 3월 10일에 공포, 5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동년 5월 15일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이 폐지되고, ‘조선사상범예방구금규칙’(쇼와 16년 부령 제140호)이 공포되었다. ‘조선사상범예방구금규칙’은 이후 1944년 9월 22일 개정(조선총독부령 제329호)된다. 강성현, 앞의 논문(2장. 일제 사상통제기제의 형성, 1925-45) 참조.

40) 미군정은 1945년 10월 9일, 아놀드 군정장관의 이름으로 법령 제11호, ‘日政법규일부개정폐기의 건’을 공포, 예비검속법을 폐지하였다. 「군정청법령」 제11호, 1945.10.9 ; 『매일신보』, 1945.10.13. 강성현은 예비검속법은 ‘조선사상범예방구금규칙(The Preliminary Imprisonment Act)’의 오역이라고 지적하였다. 강성현, 위의 논문, 376쪽.

41) 『조선일보』·『동아일보』, 1947.8.14.

42) 전국애국단체연합 비상시국대책위원회는 여순사건이 일어나자 정당 및 사회단체가 독촉 국민회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결성한 단체이다. 이 단체는 사전대책, 사무대책, 구제, 선무, 구호를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며, 이른바 애국청년을 중심으로 특별경비대 조직, 국내의 반동분자 숙청, 민병조직, 강연회와 비상시국총궐기 청년대회 개최 등을 주요사업으로 내세웠다. 이 단체의 부서는 위원장 오세창, 부위원장 백남훈, 총무부 李活 외 4명, 재무부 전용순 외 6명, 사업부 함상훈 외 7명, 조사부 문봉제 외 8명, 기획위원 류진산 한근조 외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서울신문』, 1948.11.6.

43) 전국애국단체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시 ‘공산계열 발호 방지책’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국가보안법에 1) 반국가적 행동은 공산계열임을 규정, 2) 예비검속, 3) 재산몰수 또는 가족추방의 조치 고려 등과 함께, 특히 경찰은 공산계열의 명부를 비치하여 사전방지에 노력할 것 등이었다. 『독립신문』, 1948.11.14.

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방침이었음으로 일반시민은 당국을 절대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소의 불편에 직면하게 될지라도 관대히 양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특히 "예비검속은 앞으로도 몇 일간 계속하게 될 터이니 일반 시민은 필요 없이 거리에 나타나지 말아주기를 바"라며, "일단 구속된 양민들도 취조가 끝나는 대로 금명간에 전부 석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⁴⁴⁾ 경찰이 법적 근거나 규정없이 불법적으로 예비검속을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예비검속 사건, 예비검속자 집단살해는 법적 근거나 제도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사찰경찰은 '비상사태가 야기되기 전에 불순인물을 색출 검거한다'는 것은 유사시의 사태확대를 방지한다는 데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⁴⁵⁾ 곧 사건의 예방을 위해 이른바 불순인물을 사전에 검거할 수 있다는 관념이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러한 경찰의 불법적인 관행이 예비검속 사건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법적 근거나 정당성이 없는 예비검속제도가 한국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작동하고 통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전쟁 후 예비검속사건에서 나타나는 국가폭력이 단순히 법과 제도, 정책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러한 경찰의 관행속에서 가능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예비검속제도는 공식적으로 부활하였다. 제주지역 예비검속과 집단살해사건은 한국전쟁이라는 전쟁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대개 전쟁이나 내전은 제노사이드나 정치적 제노사이드의 일반적인 전제조건을 만든다. 무엇보다 전쟁과 사회내부의 불안정은 국가가 후원하는 대량학살(state-sponsored mass murder)을 촉진하는 조건이 된다.⁴⁶⁾ 예비검속사건은 한국전쟁이라는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발생하였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이른바 치안질서를 유지한다는 이름 아래, 과거 좌익 또는 반정부 활동에 참여했거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예비검속하여 집단수용하는 조치를 내렸다.⁴⁷⁾

44) 『동광신문』, 1948.11.17.

45) 유사원, 앞의 책, 23~32쪽.

46) Matthew Krain, 1997(June), "State-Sponsored Mass Murder : The Onset and Severity of Genocides and Politicid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1, No. 3, p. 334~335.

47) 제주지역에서 예비검속을 실시한 배경에 대해서는 치안확보, 좌익세력의 인민군 가담 방지, 이승만 대통령 피신계획 등의 차원에서 설명되고 있다.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429쪽 ; 김OO 증언(2007.9.14) ; 강

1950년 6월 25일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경찰에 통첩을 보내 “전국 요시찰인 전원을 경찰에서 구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제주도경찰국은 관내 각 경찰서에 치안국 지시사항을 하달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⁴⁸⁾ 치안국은 이어 6월 29일 「불순분자 구속의 건」, 6월 30일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 7월 11일 「불순분자 검거의 건」이라는 제목의 치안국장 통첩을 잇달아 하달하고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하였다.⁴⁹⁾ 제주도경찰국과 관하 경찰서는 치안국의 지시에 따라 “중요 사찰대상자를 예검”했다.⁵⁰⁾ 제주도경찰국과 관하 경찰서가 예비검속한 사람들은 주로 경찰의 사찰대상자였으며, 과거 제주4·3사건 등에 관련된 이른바 ‘요시찰인’ 또는 ‘불순분자’였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찰의 공식문서에서 “예비검속” 조치가 일반적으로 확인된 곳은 제주지역이지만, 김해를 비롯한 육지에서도 대부분 실시되었다.⁵¹⁾ 육지의 공문서에서도 “예비검속” 관련 내용이 확인된다. 1950년 대구교도소가 재감인명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따로 작성한 『헌병예입인명부』(2호)에는 2명에 대한 죄명란이 예비검속이라고 표기되어 있다.⁵²⁾ 송요찬 헌병사령관은 1950년 7월 12일, 계엄사령관의 명령으로 발표한 「체포구금특별조치령」에서, “군 작전상 필요에 따라 계엄법 12조⁵³⁾ 소정 조항 중 체포·구금·구속에 관해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⁵⁴⁾ 여기에서 송요찬 헌병사령관은 ‘충청지역에서는 체포·구금·구속에 관하여 법원의 영장을 필요치 않으며, 특히 계엄시행

OO 증언(2007.4.20) ; 문OO 증언(2007.8. 15) ; 이도영, 2001, 「제주도민 예비검속 학살은 이승만 피신 위한 정치작업」, 월간 『말』 12월호, 186쪽.

48)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査 제1799호, 6월 25일 14:50),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49)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제호, 1950.8.6) ;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濟地檢 제168호, 1950.8.7),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50) 「예비검속자 처리에 관한 건」(1950.11.17),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51) 특히 국민보도연맹사건의 경우, 대부분 예비검속을 거쳐 구금·수용되고 집단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진실규명결정서』(2009) 참조.

52) 『헌병예입인명부』는 한국전쟁 전후시기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던 헌병이 자신들이 취급한 민간인 피의자들을 일반 형무소에 수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명부이다. 『헌병예입인명부』(제2호), 대구교도소, 1950, 국가기록원(관리번호: BD0173420).

53) 계엄법 제13조의 오기이다. 계엄법(법률 제69호, 1949.11.24) 참조.

54) 비상계엄 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계엄법(법률 제69호, 1949.11.24), 제13조.

지역에서는 예방구금을 행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⁵⁵⁾ 예방구금과 예비검속은 사실상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예비검속은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된 공식 제도였음을 말해준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주지역 경찰의 예비검속은 내무부 치안국의 공식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치안국의 지시는 계엄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적인 명령이었다. 한국전쟁 직후 정부가 민간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1950년 6월 25일 발표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단에 관한 특별조치령」,⁵⁶⁾ 7월 8일 선포한 계엄령, 7월 12일 헌병사령관 송요찬이 포고한 「체포구금특별조치령」 등이었다. 이들 법령에는 예비검속 관련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비록 7월 12일의 '특별조치령'에서 계엄시행 지역에서는 예방구금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⁵⁷⁾ 제주지역에서는 이미 6월 25일부터 민간인을 예비검속하여 구금하기 시작했으므로 이를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정부의 예비검속은 최소한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도 근거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비검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 곧 군(제주지구 계엄사령부)—경찰(제주도경찰국)—검찰(제주지방검찰청) 내부에서 법적 정당성과 권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났다.

당시 제주지방검찰청은 예비검속의 감독권 문제를 놓고 제주도경찰국, 그리고 제주지구 계엄사령부와 의견이 충돌하였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경찰국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비록 방위정책을 위해 예비검속이 필요하지만, 불법적이고 부당한 구속을 철저히 감독하는 차원에서, 양식에 따라 예비검속 결과를 보고할 것을 통첩하였다.⁵⁸⁾ 좀더 구체적으로 각 경찰서와 지서에서 예비검속자 명부를 제

55) 특별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1)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에서는 체포·구금·구속에 관하여 관할 법원의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2) 전기 지역에서는 구금 기간에 관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통용하지 않으며, 3) 계엄 시행지역에서는 예방 구금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부산일보』, 1950.7.18 ; 『대구매일』, 1950.8.15.

56)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단에 관한 특별조치령」(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 1950.6.25)은 전쟁이라는 비상사태 시기에 이른바 반민족적 또는 비인도적 범죄를 신속하고 엄중 처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특별조치령에서는 살인, 방화, 군수품 약탈 등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다른 사람의 재물 절취나 건조물 파괴, 적에게 무기나 식량 제공 등은 무기나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 법령에 규정된 죄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57) 『부산일보』, 1950.7.18 ; 「6.25전쟁발발 이후의 일지」, 『대구매일』, 1950.8.15.

58) 「예비검속 감독에 관한 건」(濟地檢 제166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제주도경찰국장 좌하, 1950.8.2),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출할 때, 주소·성명·성별·직업 등과 함께 검속사유, 석방사유 등을 기재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⁵⁹⁾ 이에 대해 제주도경찰국은 치안국장의 통첩과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내세우며 예비검속자 명부 제출은 어려우며, 기존에 각 경찰서에서 제출한 명부도 회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⁶⁰⁾

제주에서 예비검속의 감독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대립은 예비검속의 법적 근거와 절차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다시 제주도경찰국에 보낸 공문에서, 비록 예비검속이 “전시계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검찰과 무관”하지만, 그 “집행 결과”의 “부당 불법 여부에 대한 취체권은 검찰당국(엄격한 의미에서는 군사령관 지휘하의 검찰당국)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러한 해석이 예비검속에서 정실이나 과실에 따른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비상시 방위정책의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군경의 위신을 손상치 않게”하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명부 제출 요청이 이러한 공익적 취지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면서, 예비검속자 명부 회송은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⁶¹⁾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지역의 예비검속은 계엄령의 영향 아래 있었다. 정부는 1950년 7월 8일, 대통령 명의로 계엄법 제1조에 근거,⁶²⁾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⁶³⁾ 정부는 이어 7월 20일 「계엄선포에 관한 건 중 개정의 건」을 발표하여 계엄실시 지역을 남한전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자연히 제주도도 비상계엄 실시 지역에 포함되었다.⁶⁴⁾ 제주도는 해병대사령부가 계엄업무를 담당하였다. 제주주둔 해병대사령부는 1950년 6월 25일 10시를 기해 “비상계엄상태에 돌입”했고, 신현준 해병대사령관이 제주지구 계엄사령관을 겸임하였다.⁶⁵⁾ 제주주둔 해병대사령

59) 위와 같음.

60)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대 8월 7일 濟地檢 제168호」(제호, 경찰국장, 검사장, 1950.8.7),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61)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대 8월 7일 濟警査 제호」(濟地檢 제4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제주도경찰국장 귀하, 1950.8.8),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62) 계엄법 1조에서는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경우에 군사상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계엄의 선포를 할 때에는 선포 이유, 종류,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법률 제69호, 1949.11.24) 참조.

63) 계엄 실시지역은 전남전북을 제외한 남한 전역으로서 계엄사령관에는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이 임명되었으며, 그는 같은 날 비상계엄포고 제1호를 공포하였다. 7월 8일의 계엄령 선포에서는 지역적으로 전남전북이 제외되었으므로 제주도는 비상계엄 실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한국전쟁사료』 제65권, C49-C5쪽; 『서울신문』, 1950.10.12.

64) 정부는 7월 20일에 기존 7월 8일자로 발표한 계엄령 실시 지역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여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를 제외한 남한전역’은 ‘남한전역’으로 개정하고, ‘단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에 대하여는 단기 4283년 7월 21일 0시부터 실행한다’를 첨가한다”고 발표하였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C51쪽.

부는 이미 정부의 계엄령 선포 이전부터 계엄령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제주주둔 해병대사령부가 계엄령을 공포하고 치안을 담당하면서 경찰의 예비검속 업무도 군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었다. 당시 제주지구 계엄사령부는 예비검속, 불순분자 구속을 “계엄법에 의한 사법사무 처리”, “사법행정 사무”로 인식하고 있었다.⁶⁶⁾ 제주도경찰국도 예비검속은 “비상계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언급하였다.⁶⁷⁾ 이처럼 제주지구 계엄사령부는 예비검속을 계엄법에 따른 사법행위로 인식하였지만, 예비검속자 처리과정에서는 계엄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를 적용하거나 준수하지 않았다.

65) 해병대사령부, 1962, 『해병전투사』 제1집 증보판, 40쪽.

66) 「불순분자 구속 세부지시에 관한 건」(南濟戒發 제6호, 1950.7.8),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67) 「건명 : 불순분자 검거의 건-대 7월 11일 압호전보 제19호」(제호, 1950.8.4. 입안),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Ⅲ. 제주 예비검속사건의 지역별 전개과정

1. 제주시 지역의 예비검속사건

제주시 지역에서는 제주읍을 비롯하여 조천면·애월면에서 예비검속사건이 발생하였다. 제주경찰서 및 관할지서 경찰, 해병대 등은 1950년 6월 25일~8월 중순경, 이들 제주시 지역에서 주민들을 예비검속하여 경찰서 및 지서 유치장, 그리고 제주읍에 소재한 주정공장 창고 등에 구금하였다.

제주시 지역에서 예비검속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제주읍에서는 제주경찰서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을 연행하여 구금하였다. 피해 유족인 신수용은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온 제주경찰서 경찰에 연행되었다고 증언하였다.⁶⁸⁾ 또한 피해 유족인 강창욱은 제주경찰서 경사 김OO의 형 김OO이 경찰 2명을 데리고 집으로 찾아와 아버지를 연행해갔다고 증언하였다.⁶⁹⁾ 제주경찰서 관할 각 지서도 제주읍 일부지역에서 예비검속을 실시했다. 곧 삼양지서는 봉개리·삼양리·도련리 주민, 화북지서는 화북리 주민, 외도지서는 외도리 주민, 도두지서는 도두리 주민들을 각각 예비검속하였다.⁷⁰⁾ 다만 아라리에서는 경찰이 아닌 해병대가 주민들을 예비검속하여 구금하였다.⁷¹⁾

68) 신수용 증언(2006.11.6).

69) 강창욱 증언(2006.11.15).

70) 송종진 증언(2009.8.21) ; 김병건 증언(2006.5.19) ; 허락희 증언(2008.8.7) ; 한연순 증언(2010.3.30) ; 문장부 증언(2008.8.6).

71) 아라리 주민 현광하는 예비검속 연행 및 구금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그날이 음력 7월 4일입니다. 나하고 현상호·현영하 3명이 관덕정 마당에서 훈련을 받고 올라오다가 삼성혈 근처에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아라리에서 광양쪽으로 군 트럭이 내려왔습니다. 군 트럭에는 우리 형 현영하와 같은 마을 주민 김재봉·현기정·현경하·박창수·박창순·박생금·현영욱·김모연이 타고 있었고, 운전석에는 군인이, 보조석에는 월평리 출신 안창수가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트럭이 서더니 3명 모두를 태웠습니다. 관덕정 근처 여관 같은 곳에 도착해서 사복차림의 사람들에게 조사를 받았습니. 당시는 헌병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명씩 불러내서 조사를 했는데 몽둥이로 때리고, 전기취조도 받았습니다. 조사 내용은 산에 가서 무엇을 했냐는 것 뿐이었습니다. (...) 다음날인 음력 7월 5일에는 우리를 군 트럭에 태우더니 주정공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주정공장 창고에는 이미 10여명 정도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만, 모두 포승된 채 뒤로 돌아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창고에 들어가서도 또 조사를 받았습니. 이번엔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한명씩 창고 바깥에 있는 사무실로 불러가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 내용은 전날과 동일했습니다. 창고에서는 형(현영하)이 앞에 앉고 내가 뒤에 앉아있어도 말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 다음날인 음력 7월 6일 밤 10시경, 눈을 다 감으라고 하더니, 호명하는 사람들은

조천면에서는 조천지서와 함덕지서 경찰이 중심이 되어 관내 주민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담당했다.⁷²⁾ 선흘리 주민 김형조는 예비검속되어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다. 그는 경찰이 선흘리에 와서 주민들을 집합시켜 놓고 이름을 불러서 차에 태웠으며, 자신과 한문찬은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도 우 OO 경찰이 차에 태웠다고 증언하였다.⁷³⁾ 예비검속 석방자 한중용은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함덕지서 근처에서 우리 부락 대한청년단원이 배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함덕지서 우OO 순경이 오더니, 우리를 무조건 연행했습니다. 지서 앞에 군 트럭을 세워놓고 보이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트럭에 태웠습니다. 대한청년단원이어서 연행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는데 도착해보니 제주경찰서 마당이었습니다.”⁷⁴⁾

애월면에서는 애월지서·하귀지서의 경찰들이 중심이 되어 관내 예비검속자들을 연행하였다.⁷⁵⁾ 예비검속자들은 애월지서에서 임시수용소로 사용하던 애월면사무소 앞 창고에 구금되었다가 다시 제주경찰서로 이송되었다.⁷⁶⁾ 광령리 주민들은 하귀지서로 모이라는 연락을 받고 나갔다가 해병대 군인에 인계되어 애월면사무소 앞 창고에 구금되었다.⁷⁷⁾ 그 밖에 신업지서나 제주경찰서 경찰에게 연행된 금덕리⁷⁸⁾·장전리⁷⁹⁾·하가리⁸⁰⁾·하귀리⁸¹⁾·어음리 주민들은 바로 제주경찰서로 이

‘대석방’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시 창고에는 현영하가 두 명이었는데 “현영하”를 호명할 때 제가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니, 우리 형님 연령을 얘기를 해서 형님이 나갔습니다. 마을에서 잡혀온 사람들은 다 호명되어 나갔고 삼성혈에서 연행된 우리 3명은 호명이 안됐습니다. 다음날은 창고에 남은 사람들과 같이 제주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제주경찰서 유치장에서 한 달포 이상, 약 30일 정도 수감됐다가 현상호·현영하(친구)와 같이 석방이 됐습니다.” 현광하 증언(2006.11.6).

72) 조천지서는 조천리를, 함덕지서는 함덕리·선흘리·복촌리 주민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담당했다. 한중용 증언(2009.7.9) ; 김형조 증언(2001.9.25) ; 이기원 증언(2006.6.28) ; 부영희 증언(2006.6.28).

73) 김형조 증언(2001.9.25).

74) 한중용 증언(2009.7.9).

75) 애월지서는 애월라고성리·금성리·어도리 주민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담당했다. 하귀지서는 광령리·하귀리, 신업지서는 금덕리·장전리를 각각 담당했고, 하가리 주민들은 하가리출장소 경찰에 예비검속되었다가 곧바로 제주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이복자 증언(2009.8.20) ; 강윤아 증언(2009.8.20) ; 문국부 증언(2009.10.28) ; 양영자 증언(2009.3.10) ; 임인봉 증언(2009.3.10) ; 양용해 증언(2006.11.16) ; 강위진 증언(2009.8.24) ; 강기택 증언(2009.8.24) ; 고아여 증언(2009.8.20) ; 이정용 증언(2009.8.21).

76) 김경훈 증언(2009.3.13) ; 양경훈 증언(2009.8.21) ; 강기석 증언(2009.3.13) ; 이복자 증언(2009.8.20) ; 문국부 증언(2009.10.28) ; 장정훈은 아버지가 1950년 6월 말경 애월면 관내 주민들과 같이 애월지서로 연행된 후 지서 유치장이 협소하여 지서 동쪽 초등학교 앞에 있는 2층 집에 하루 동안 수용되었다가 다음날 트럭에 실려 제주경찰서로 이송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장정훈 증언(2010.2.8).

77) 양재안 증언(2009.3.12).

78) 강위진은 아버지가 강기택은 형이 금덕리 파견대 급사 변OO으로부터 파견대에서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송되어 구금되었다.⁸²⁾

제주경찰서 관내 예비검속자 연행 과정에는 경찰만이 아니라, 경찰서·지서·출장소·파견대의 급사,⁸³⁾ 대한청년단원,⁸⁴⁾ 마을 이장,⁸⁵⁾ 해병대,⁸⁶⁾ 헌병대⁸⁷⁾ 등도 참여했다. 예비검속 기간은 전체적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8월 중순까지였는데, 대부분은 6월 말부터 7월 초순경에 연행되었다. 당시 경찰은 미리 작성된 예비검속자 명단에 따라 사람들을 연행하였다.

그러나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이 명단에 있는 사람을 연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검속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을에서 개인적인 원한관계도 크게 작용했다. 특히, 일부 민간인 경찰 협조자들이 개인적인 원한관계에 따라 예비검속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연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는 민간인 경찰 협조원들이 주민들의 예비검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조천리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에 대해 예비검속 석방자 김민택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
- 간간 후 곧바로 제주읍으로 이송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강위진 증언(2009.8.24) ; 강기택 증언(2009.8.24).
- 79) 양용해는 1950년 6.25 발발 며칠 후, 말을 탄 채 집으로 찾아온 신입지서 이OO 주임에게 아버지가 연행됐으며 당시 쌀을 가지고 나오라는 명령에 따라 쌀을 전대에 담아 허리춤에 묶고 나가니 그 즉시 포송되어 말안장에 묶인 채로 끌려갔다고 증언하였다. 양용해 증언(2006.11.16).
- 80) 양영자는 하가리 예비검속자들이 애월지서 임시 수용소에 구금되지 않고, 연행 즉시 제주경찰서로 이송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양영자 증언(2009.3.10).
- 81) 강재순은 올케가 같은 마을 출신 김OO에게 연행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김창길·김창옥은 어머니를 연행한 김OO과 경찰들이 제주읍 삼도리에 거주하던 아버지까지 연행한 뒤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강재순 증언(2010.3.4) ; 강창길 증언(2010.2.26) ; 강창옥 증언(2006.11.15).
- 82) 강위진 증언(2009.8.24) ; 강기택 증언(2009.8.24) ; 임인봉 증언(2009.3.10) ; 양영자 증언(2009.3.10) ; 강재순 증언(2010.3.4) ; 강창길 증언(2010.2.26) ; 강창옥 증언(2006.11.15).
- 83) 강위진 증언(2009.8.24).
- 84) 정봉영 증언(2010.1.18).
- 85) 정영실 증언(2008.6.11).
- 86) 장용문은 1950년 8월 13일, '제주도인민군환영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는 혐의로 제주주둔 계엄군인 해병대 정보참모실에 연행·구금되어 취조를 받던 중 혹독한 고문으로 1950년 8월 14일(음력 7월 1일)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제주도 유지사건'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사건으로 연행된 사람은 이윤희(조흥자동차부사장), 홍순원(총무국장), 전인홍(지방과장), 김대홍(도립병원장), 김재천(법원장), 백형석(적십자사지부장), 원복범(검사장), 김차봉(읍장), 김영희(주정회사 사장), 이인구(전 사회과장), 김무근(변호사), 최원순(변호사), 한상용(농업중학교 교사), 최남식(농업중학교장), 조규환(농업중학교 훈련교관), 장용문(총후보국회 서기) 총 16명이다. 해병대 정보참모실 제2과장 신인철 대위는 1950년 8월 8일 제주도립병원 원장 김대홍 등 6명을 체포하였고, 8월 9일에는 제주지방법원장 김재천 외 14명의 제주도내 고관 및 지방유지급 인사들을 체포 구금하였다. 이들에 대해 정보과 소속 김종만 병조장, 박서상·유호선 경사 등은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 고문, 곤봉 구타, 총살 위협 등의 폭력을 자행하였다. 「제주도 인민군환영준비위원회 사건 수사기록 - 제주폭동치사사건 (350-196)」, 해군수사 ; 양재안 증언(2009.3.12) ; 장영자 증언(2010.3.30).
- 87) 현광하 증언(2006.11.6) ; 현승윤 증언(2009.4.20).

“1950년 6·25전쟁이 터지니까 조천리 고OO, 장OO, 윤OO 3명이 조천리 청년들을 잡아다 바쳤습니다. 고OO, 장OO, 윤OO은 조천지서 경찰이나 직원은 아니었는데 지서에 붙어먹으면서 조천에서 왕치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 6월 25일 초저녁에 이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따라서 지서로 가니 지서에 친분이 있는 신경사가 저보고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가지고 있는 수첩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갸웃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 이름이 없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옆에 경찰들이 쪽 서있으니까 말을 못했습니다. (...) 경찰서 마당에도착하니 한명 한명 이름을 호명하면서 포승을 풀고 감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이름이 호명된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뺨이 든든하구나!”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다른 사람 대신 잡혀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천지서에서 신경사가 고개를 갸웃거렸던 이유가 내 이름이 명단에 없어서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름이 호명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잡혀와야 할 사람이 안 오고 대신 잡혀온 것이니까, 당연히 명단에 이름이 없었던 겁니다.”⁸⁸⁾

제주시 지역의 예비검속자 중에는 귀순자도 많이 발견된다. 예비검속 석방자 양재안에 따르면, 광령리 예비검속대상자들은 주로 한라산에 도피했다가 돌아온 귀순자들이었다. 양재안은 광령리에서 예비검속된 사람들의 연행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하귀지서에서 귀순자들을 일주일에 3번씩 불렀습니다. 한꺼번에 다 부르는 건 아니고 각각 따로, 순경이 각자 집으로 찾아와서 지서에 왔다 가라는 연락을 해줬습니다. 양재문, 진용성, 박지석, 진영호, 홍원용, 김문주, 이병순, 고희선, 김봉언 이렇게 광령리에서 예비검속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귀순자였습니다. 광령1리만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6·25 사변이 나니까 하루는 점심을 준비하고 출장소로 나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귀순자들을 전부 한꺼번에 부르기에 어디 토벌이라도 가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귀지서에 집합을 했더니 해병대 군인 하나가 우리를 인솔해서 애월면사무소 앞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갔습니다.”⁸⁹⁾

제주경찰서는 예비검속자들을 경찰서 및 지서 유치장, 그리고 경찰서에서 사용하던 민간인 임시수용소인 주정공장 창고 등에 구금했다. 경찰과 해병대원들이 이들 유치장과 창고 경비를 담당하면서 예비검속자들을 감독했다.⁹⁰⁾ 경찰에 연행

88) 김민택 증언(2007.7.10).

89) 양재안 증언(2009.3.12).

90) 제주경찰서 유치장, 애월면사무소 앞 창고 경비는 경찰과 경찰 소속 의용소방대원들이, 제주 주정공장 창고 경비는 제주주둔 계엄사령군인 해병대와 경찰이 각각 담당했다. 양재안 증언(2009.3.12) ; 이봉문 증언(2009.8.19) ; 락OO 증언(2010.3.26) ; 김OO 증언(2010.3.25).

된 대부분의 예비검속자들은 조사나 취조 없이 곧바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이는 경찰이 사전에 준비된 명단을 가지고 예비검속을 실시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만, 해병대에 연행된 일부 예비검속자들은 군 헌병대로부터 4·3사건 당시 전력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주정공장 창고에 구금되었다고 증언하였다.⁹¹⁾

제주시 지역에서 연행된 예비검속자들의 구금 환경은 장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열악하였다. 예비검속자들은 기본적으로 구금된 장소에서 가족들의 면회나 접촉은 대체로 금지되었고, 특별한 경우에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식사는 가족들이 직접 날라서 조달하거나, 경찰서에서 구금자 가족으로부터 양식을 거두어 제공하였다.⁹²⁾ 피해 유족 송종진은 “남편과 봉개 주민들이 잡혀간 이후, 봉개출장소에서 잡혀간 사람들에게 먹일 쌀과 돈을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석달치 먹을 보리쌀과 돈을 보냈”으며, “한 번에 보리쌀 서말하고 돈 1,800원씩 세 번 보냈”다고 말하였다.⁹³⁾ 일부 구금자 가족들은 갈아 입을 옷과 사식을 직접 전달하기도 하였다.⁹⁴⁾ 당시 예비검속자들의 수용시설과 환경은 매우 열악하였다.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한중용은 당시 구금시설과 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경찰서 유치장 감방에 들어가서 한 달 정도를 살았습니다. 감방이 10개 정도 있었는데 한 방에 4~50명 정도씩 꼭 차 있었습니다. 방은 비좁고 날씨는 너무 덥고, 옷도 다 벗어 버리고 거의 알몸 상태로 생활을 했습니다.”⁹⁵⁾

예비검속 석방자인 양재안도 “유치장에 들어가 보니, 감방마다 사람이 가득가

91) 양재안 증언(2009.3.12) ; 현광하 증언(2006.11.6) ; 현관하 증언(2008.8.6).

92) 문경수는 아버지가 애월지서에 연행된 후, 애월지서로부터 쌀을 내라는 연락을 받고 여러 번 쌀을 냈다고 증언하였다. 양재안은 애월면사무소 앞 창고 구금 당시 각자 집에서 쌀을 가져다주면 안에서 밥도 지어먹었으며, 오히려 출장소에 오라가라 안하니까 더 편하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문경수 증언(2010.1.25) ; 양재안 증언(2009.3.12).

93) 송종진 증언(2009.8.21).

94) 한중부는 아버지가 제주경찰서 유치장 구금 당시 제주 시내에 살고 있던 누님이 갈아 입을 옷을 가지고 면회를 다녔다고 증언하였다. 한중부 증언(2008.6.11) ; 강윤아는 오빠가 애월면사무소 앞 창고에 구금되어 있을 당시 직접 면회를 다녔다고 증언하였다. 강윤아 증언(2009.8.20).

95) 한중용 증언(2009.7.9) ; 이와 관련 예비검속 석방자 신태호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제주경찰서 유치장에는 감방이 10여개 정도가 있었는데 한 방에 50명 정도씩 꼭 차 있었습니다. 약 3개월 정도를 조사도 한번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가 하루는 감방이 비좁으니까 욕지 넓은 감방으로 옮긴다면서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신태호 증언(2009.8.26).

득”으며, “방은 비좁고 날씨는 더워서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 팬티만 입고 있었는데, 이름이 호명되면 팬티만 입은 채로 다 나갔”다고 말하였다.⁹⁶⁾ 예비검속 석방자 김민택은 당시 예비검속자 구금 환경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한방에 약 50명 이상씩 수용이 됐습니다. 감방은 비좁고, 여름이라 날은 덥고, 사람들 열기로 인해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옷이랑 신발을 벗어서 밥을 들었던 구덕에 담으라고 하더니 그걸 다 가지고 갔습니다. 감방 안에서는 다들 뺨스만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6감방에 남일차부 사장이 같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감방 문을 두드리면서 “동문로터리 남일차부에 가면 도라무깡이 많으니까 죽이더라도 물이나 먹여서 죽여 달라!”고 하소연 했습니다.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감방에서 4개월 정도를 살았습니다.”⁹⁷⁾

이처럼 예비검속자들의 구금 장소인 경찰서 유치장의 시설과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참혹했다. 제주경찰서는 당시 5~6명 정도 수용 가능한 유치장 공간에 30~50명씩 구금시켰기 때문에 예비검속자들이 제대로 앉아 있거나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예비검속자들은 경찰이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굶주림에 시달렸으며, 특히 무더운 여름날 유치장에 질병이 번져 많은 고통을 겪었다.⁹⁸⁾ 병에 걸린 일부 사람들은 당국에 병보석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당시 보석이나 석방은 경찰국장이 계엄사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⁹⁹⁾ 예비검속자들은 열악한 환경과 식사부족에 따른 굶주림 등으로 병사하는 경우도 많았다.¹⁰⁰⁾

96) 양재안 증언(2009.3.12).

97) 김민택 증언(2007.7.10).

98) 한중용은 제주경찰서 유치장 구금 당시 유치장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 시켰으며 입원을 결정하는 권한은 수사계에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한중용은 수사계에 근무하던 외숙 고OO 경찰을 통해서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고, 약 일주일 정도 입원 후 석방되었다. 이을형은 형이 경찰서 유치장 구금 중에 병이 발생하여 적십자병원에 입원했으며 병원으로 문병을 다니던 중에 형이 없어졌다고 증언하였다. 한중용 증언(2009.7.9) ; 이을형 증언(2010.1.27).

99) 「예비검속자 발병조치에 관한 건」(모서사 제2992호, 모슬포경찰서장, 제주도경찰국장 좌하, 1950.8.9) ; 「예비검속자 발병조치의 건」(제호, 경찰국장, 제주도지구계엄사령관, 1950.8.12. 입안) ; 「예검자 보석에 대한 의견 구신의 건」(성산포경찰서장, 제주도경찰국장 좌하, 1950.8.31),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첩』(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100) 봉개리 주민 고태은·임상보는 1950년 6월 25일경 봉개출장소 경찰에 예비검속되어 삼양지사로 연행된 후 제주경찰서로 이송, 경찰서 유치장 구금 중 병사하였다. 같은 마을 번석찬은 1950년 7월 초순경 삼양지사에 연행·구금되었다가 1950년 8월 말~9월 초순경 석방된 후 구금 시 생긴 병환으로 인해 1950년 10

제주경찰서는 구금한 예비검속자들에 대해, 개인별로 과거 경력이나 활동을 심사하여 등급을 분류하였다. 경찰에 검속된 대부분의 예비검속자들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 예비검속자 명단은 기본적으로 전쟁 이전의 요시찰인 명부 등 경찰의 사찰기록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예비검속 실시 이후에 다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예비검속자들을 상대로 직접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로 기존에 작성하여 관리해 오던 사찰기록을 토대로 심사하고 D에서 A까지 4개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경찰은 예비검속자 가운데 D와 C등급으로 분류된 민간인들을 계엄사령부, 곧 해병대 사령부로 송치하였다. 이들 D와 C등급으로 분류된 예비검속자들은 1950년 7월 16일~8월 20일 사이에 해병대에 송치되어 대부분 제주읍 정뜨르비행장에서 총살되었으며, 나머지 일부는 제주읍 산지항에서 배에 실려 나가 바다에 수장되었다.¹⁰¹⁾

2. 모슬포 지역의 예비검속사건

모슬포 지역에서는 한림면·대정면·안덕면에서 예비검속사건이 발생하였다. 모슬포경찰서와 관할지서 경찰, 그리고 해병대 등은 1950년 6월 25일~8월 중순 경에 지역주민 가운데 예비검속 대상자들을 연행하여 경찰서와 지서 유치장, 모슬포 절간고구마창고, 한림 어업조합창고 등에 구금하였다.

모슬포 지역의 예비검속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대정면에서는 모슬포경찰서와 대정지서 경찰이 중심이 되어 주민 가운데 예비검속 대상자를 연행하였다.¹⁰²⁾ 일부 신도리·영락리에서는 무릉지서 경찰이 중심이 되어 예비검속

월 28일 사망하였다. 고행은 증언(2008.6.11) ; 임홍중 증언(2008.8.7) ; 변규보 증언(2008.6.11).

101) 진실화해위원회, 『제주예비검속사건(제주시·서귀포시) 진실규명결정서』(2010) ;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430~431쪽.

102) 이순희는 부모님이 집으로 찾아온 모슬포경찰서 문순경 등 경찰 2명에 의해 연행되었다고 증언하였고, 이용부는 모슬포경찰서 고행사가 부친을 연행해갔다고 증언하였다. 이순희 증언(2007.3.19) ; 이용부 증언(2007.4.16) ; 강유복·이승현·장의봉은 부친이 대정지서 경찰에 연행되어 모슬포 절간고구마창고에 구금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강유복 증언(2007.3.19) ; 이승현 증언(2007.3.14) ; 장의봉 증언(2007.3.20).

을 실시하였다.¹⁰³⁾ 한림면에서는 한림·고산·저지지서 경찰이 중심이 되어 관내 주민 가운데 예비검속 대상자를 연행하였고,¹⁰⁴⁾ 안덕면에서는 안덕지서 경찰이 예비검속을 담당하여 주민들을 연행했다.¹⁰⁵⁾

모슬포 지역의 예비검속에서는 경찰만이 아니라, 경찰서·지서의 급사,¹⁰⁶⁾ 마을 이장,¹⁰⁷⁾ 서북청년단원,¹⁰⁸⁾ 대한청년단원¹⁰⁹⁾ 등도 동원되었다. 특히 모슬포경찰서는 과거 도피자·귀순자 명부, 인민위원회 관련 명부, 남로당 관련 명부 등 제주 4·3사건 관련 사찰기록을 토대로 예비검속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행하였다.¹¹⁰⁾

모슬포경찰서는 예비검속자들을 경찰서 유치장 및 모슬포 절간고구마창고, 한림 어업조합창고, 무릉지서 창고 등에 구금했다. 모슬포 절간고구마창고에는 모슬포경찰서 및 고산지서·안덕지서·대정지서·저지지서에서 연행된 예비검속자들이 주로 구금되었다.¹¹¹⁾ 한림 어업조합창고에는 한림지서에서 연행된 예비검속자들이 구금되었고,¹¹²⁾ 무릉지서 창고에는 무릉지서에서 연행된 예비검속자들이

103) 양창백은 숙부가 1950년 8월 10일경 무릉지서 오순경에 의해 연행되어 무릉지서 열 창고에 구금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양창백 증언(2006.5.18) ; 양천익·김이부·김행철은 부친(양부)이, 조공천은 형이 무릉지서에 연행·구금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양천익 증언(2006.12.14) ; 김이부 증언(2007.3.13) ; 김행철 증언(2007.4.16) ; 조공천 증언(2006.5.18).

104) 한림지서는 명월리·대립리·한림리·한수리를, 고산지서는 고산리·용수리·낙천리를, 저지지서는 청수리·저지리를 각각 담당, 관내 주민 가운데 예비검속 대상자를 연행하였다. 강승진·김운중·신태업은 부친 및 가족이 한림지서 순경에게 연행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강승진 증언(2006.5.18) ; 김운중 증언(2006.8.16) ; 신태업 증언(2006.5.25) ; 고석지·고영우·김일호·양중원은 부친 및 형이 고산지서 순경에게 연행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고석지 증언(2006.6.21) ; 고영우 증언(2007.4.17) ; 김일호 증언(2006.12.15) ; 고행길·양상선은 부친이 저지지서에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직접 지서로 찾아갔다가 체포되어 모슬포로 이송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고행길 증언(2007.3.22) ; 양상선 증언(2006.5.25).

105) 양규방은 부친이 안덕면사무소를 통해 안덕지서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나갔다가 검속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양규방 증언(2007.3.15) ; 강형화·오용진은 부친(양부)이 안덕초등학교 교사(교장) 재직 당시, 학교로 찾아온 안덕지서 순경에게 연행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강형화 증언(2007.3.19) ; 오용진 증언(2007.6.17) ; 이운배는 안덕지서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형을 연행해갔다고 증언하였다. 이운배 증언(2007.3.19).

106) 좌용수는 고산지서 순경 1명과 급사 1명이 집으로 찾아와 부친을 연행해갔다고 증언하였다. 좌용수 증언(2006.6.13) ; 조정배는 저지지서 급사가 집으로 찾아와 지서장이 찾는다면 부친을 데리고 갔다고 증언하였다. 조정배 증언(2007.4.17).

107) 김경택은 덕수리 이장이 집으로 찾아와 형을 데리고 갔으며, 이후 모슬포 절간고구마창고에 구금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김경택 증언(2007.3.13) ; 좌혜생은 마을(용수리) 이장이 집으로 찾아와, 고산지서에서 찾는다면 부친을 데리고 나간 후 모슬포로 이송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좌혜생 증언(2006.6.23).

108) 김명문은 부친이 한림지서 경찰과 서북청년단에, 김순열은 시어버지가 서북청년단에게 연행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김명문 증언(2006.5.24) ; 김순열 증언(2006.6.21).

109) 강병성은 남편이 대한청년단 회의를 보러 나갔다가 검속되었다고 증언하였고, 정우철은 부친이 한청에 일이 있다며 나간 후 연행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강병성 증언(2007.4.17) ; 정우철 증언(2006.12.14).

110) 김OO 증언(2007.6.21) ; 김OO 증언(2007.5.11) ; 고OO 증언(2007.4.19) ; 고OO 증언(2006.9.22) ; 강OO 증언(2007.4.20) ; 김OO 증언(2006.9.20) ; 문OO 증언(2007.8.15).

111) 김경택 증언(2007.3.13) ; 이순희 증언(2007.3.19) ; 이성실 증언(2007.3.20) ; 고창언 증언(2007.4.16) ; 이용부 증언(2007.4.16) ; 송상조 증언(2007.3.13) ; 김해동 증언(2007.3.20) ; 박영찬 증언(2006.5.17).

112) 오용승 증언(2006.5.17) ; 김명문 증언(2006.5.24) ; 양문흙 증언(2006.6.21) ; 강중훈 증언

대부분이었다.¹¹³⁾ 이들 구금 장소에서는 경찰과 의용소방대원들이 경비를 맡았다. 한림 어업조합창고는 한림지서 소속 의용소방대원,¹¹⁴⁾ 무릉지서 창고는 무릉지서 소속 의용소방대원,¹¹⁵⁾ 모슬포 절간고구마창고는 모슬포경찰서 소속 경찰이 각각 경비를 담당하며 감시하였다.¹¹⁶⁾ 모슬포 절간고구마창고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사용하던 장소로 예비검속자들이 가장 많이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슬포경찰서에서 직접 경비를 담당했다.

예비검속자들이 구금된 창고에서 가족들과 면회나 접촉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었다.¹¹⁷⁾ 피해 유족 이경익은 면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창고 보초를 서던 경찰의 장모에게 부탁을 해서, 겨우 면회를 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형님은 절간고구마창고에 수용되었다가 희생당했습니다. 절간고구마창고가 두 개가 붙어 있었는데 큰 창고 안에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창고 바닥은 콘크리트였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있는 창고 옆에 취사장이 있었습니다. 즉 동너집은 취사장, 서너집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곳이었습니다. 밥은 거기서 당번이 돌아가면서 자기대로 해서 먹었습니다. 잠깐 사람들이 직접 했습니다. 창고에 몇 명이 구금되어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형님이 희생당하기 전날 내가 면회를 갔다가 죽을 뻔 했습니다. 삶은 고기 서너근을 사고 면회를 갔습니다. 원래 면회는 안되는 거였지만, 당시 창고 보초서는 경찰의 장모를(곱새할멈) 빌어서 갔습니다. 곱새할멈을 빌어서 부탁을 했습니다. 곱새할멈이 사위한테 가서 “저 조카가 자기 형 얼굴이라도 보고 가겠다고 한다”고 하니 “쓸데없는 소리 말라. 큰일난다”고 했습니다. 얼굴만 보고 나온다고 사정을 해서 겨우 들어갔습니다.

(2006.6.27) ; 양문수 증언(2006.6.27) ; 이정순 증언(2006.6.28) ; 조성기 증언(2006.5.18) ; 채만화 증언(2006.5.19).

113) 양영숙 증언(2006.6.22) ; 김행철 증언(2007.4.16) ; 조공천 증언(2006.5.18) ; 양창백 증언(2006.5.18) ; 이경일 증언(2007.3.20) ; 김정자 증언(2006.6.28) ; 홍공립 증언(2006.6.29).

114) 문OO 증언(2007.8.17).

115) 변OO 증언(2006.6.1).

116) 강선호는 부친이 모슬포 절간고구마창고 구금 당시 면회를 가서, 보초를 서던 고OO 순경으로부터 “얼마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고, 김세보 역시 부친이 창고 구금 당시 어머니가 면회를 가서, 보초서는 경찰로부터 “죄가 없으니까 곧 풀려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강선호 증언(2006.8.17) ; 김세보 증언(2007.6.20) ; 김익수는 부친이 창고 구금 당시 보초를 서던 경찰이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김익수 증언(2007.3.14).

117) 강유복은 부친이 모슬포 절간고구마창고 구금 당시, 모친이 여러번 면회를 갔으나 면회를 시켜주지 않아 직접 얼굴을 볼 수 없었으며, 창고 보초를 통해 가지고간 음식과 옷을 전해주었다고 증언하였다. 강유복 증언(2007.3.19) ; 송상조·김익수는 부친이 절간고구마창고 구금 당시, 경비가 삼엄해서 면회를 할 수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송상조 증언(2007.3.13) ; 김익수 증언(2007.3.14) ; 김경택은 형이 모슬포 절간고구마창고 구금 당시, 외삼촌 강OO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들이 면회를 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김경택 증언(2007.3.13) ; 강병성은 남편이 연행된 지 15일 정도 후 금릉출장소에서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오면 전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금릉출장소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 모슬포 절간고구마창고로 찾아가 남편을 직접 면회했다고 증언했다. 강병성 증언(2007.4.17) ; 김정자는 부친이 무릉지서 구금 당시 어머니가 면회를 갔으나, 면회는 시켜주지 않고 매만 맞고 돌아왔다고 증언하였다. 김정자 증언(2006.6.28).

창고 안에 들어가보니 얼굴을 아는 동네 분들이 5~6명 정도 있었습니다. 삶은 고기를 보더니 왜 술은 안가져 왔냐며, 고기만은 못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같이 왔던 곽새할멈이 술을 구해오겠다고 나갔습니다. 저는 취사장에 가서 술을 따라 마실 물사발을 챙겨 왔습니다. 할멈이 구해온 술을 한잔씩 따라 마시던 중, 세 사람 쯤 마시고 네 번째 사람에게 따라주려는 찰라, 보초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순찰을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겁이 나서 마시던 술과 고기를 모두 물속에 담가버렸습니다. 순찰을 나온 경찰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묻자, "오늘 취사 담당"이라고 대답해서 겨우 살았습니다.¹¹⁸⁾

예비검속된 구금자들의 식사는 가족들이 직접 날라서 조달하거나¹¹⁹⁾ 경찰서에서 구금자 가족으로부터 양식을 거두어 제공하였다.¹²⁰⁾ 가족들이 직접 식사를 제공한 경우는 구금자의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¹²¹⁾ 이순희는 부모가 모두 절간고구마창고에 구금된 후, 모슬포경찰서로부터 쌀을 가져오라는 연락을 받고 구금장소에 다녀왔다고 증언하였다.¹²²⁾

"부모님이 모두 모슬포경찰서에 연행되고 나서 모슬포경찰서로부터 절간고구마창고로 쌀을 가져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은 딱 한번 마을 이장을 통해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쌀을 구덕에 지어 창고까지 직접 갔습니다. 창고는 건물이 2개 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건물엔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건물은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해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너도 죽고 싶냐!"며 혼을 냈습니다. 밥을 짓고 있던 사람이나 창고를 관리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투나 행동이 너무 고약해서 일반 주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8) 이경익 증언(2006.6.2).

119) 강석호는 옆집에 살고 있던 모슬포경찰서 소속 백순경을 통해 음식과 옷을 전했다고 증언하였다. 강석호 증언(2007.3.14) ; 모슬포 절간고구마창고와 달리, 한림어업창고 및 무릉지서는 가족들로부터 매일 사식을 받았다. 김순열·김정아·김창욱·신태업 등은 부친이 한림어업창고 구금 당시 가족들이 음식을 마련해서 매일 면회를 다녔다고 증언하였다. 특히 신태업은 아버지를 석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과 계란 500개를 상납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준비를 하던 중 아버지가 모슬포로 이송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김순열 증언(2006.6.21) ; 김정아 증언(2006.5.18) ; 김창욱 증언(2006.5.19) ; 신태업 증언(2006.5.25) ; 양문흠 증언(2006.6.21) ; 김행철은 양부가 무릉지서 구금 당시 어머니가 매일 사식을 전했다고 증언하였다. 김행철 증언(2007.4.16).

120) 박옥이는 부친 연행 당시 옷에 양식 한되를 싸서 올리라는 지시에 따라 어머니가 아버지 옷에 양식 한되를 담아 줬다고 증언하였다. 박옥이 증언(2007.4.4) ; 이순희 증언(2007.3.19) ; 윤세민 증언(2007.5.10).

121) 홍공립 증언(2006.6.29) ; 강선호 증언(2006.8.17) ; 이정순 증언(2006.6.28) ; 양신하 증언(2006.11.17) ; 김운중 증언(2006.8.16) ; 김행철 증언(2007.4.16) ; 조공천 증언(2006.5.18) ; 오용승 증언(2006.5.17).

122) 이순희 증언(2007.3.19).

모슬포 지역 예비검속자들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개인별로 등급이 분류되었다. 모슬포 경찰서는 구금한 예비검속자들을 개인별로 심사하고 등급을 나누었다. 모슬포 경찰서도 예비검속자들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과거 사찰기록을 토대로 D에서 A까지 4개 등급으로 분류한 다음, D와 C등급 예비검속자들은 군에 송치하였다.

모슬포 절간고구마창고와 한림 어업조합창고에 구금됐던 예비검속자들이 군에 송치되는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¹²³⁾ 이는 경찰의 군 송치가 주민들이 잠든 새벽에 비밀리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무릉지서 창고 경비를 담당했던 변OO은 구금되었던 예비검속자들의 송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군인이 트럭을 무릉지서 창고 앞에 딱 세워놓고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을 실었습니다. 포승을 채우지는 않았는데 분위기는 많이 험악했습니다. 트럭에 타고 있는 군인이 사람들이 트럭에 올라 올 때마다 고개도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트럭을 타고 온 군인들이 트럭에 실을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릉지서 경찰들은 트럭이 몇 시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창고에 구금된 사람들은 집에서 사식을 제공받았는데 지서에서 가족들에게 저녁식사를 조금 빨리 가져오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다른 날은 그런 적이 없었고 그날 하루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을에 가서 해당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서에서는 사람들을 실어갈 것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가족들한테 식사를 빨리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¹²⁴⁾

모슬포경찰서의 예비검속자 송치는 제주지구 계엄사령부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예비검속자들은 1950년 7월 16일~8월 20일 사이에 해병대에 송치되어 대정면 상모리 첫알오름에 위치한 일제시대 탄약고터와 제주읍 정뜨르비행장에서 총살되었다.¹²⁵⁾ 예비검속자의 송치는 모슬포 경찰서가 작성한 예비검속자 명부와

123) 대부분의 유족들은 군 송치 당시 상황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창고로 사식을 준비해 갔더니 창고가 비어있었던 날(1950.8.20), 창고에서 사람들을 태운 트럭이 지나가는 것을 목격한 날을(1950.8.19) 송치일 또는 희생일로 증언하였다. 양신하 증언(2006.11.17) ; 양천익 증언(2006.12.14) ; 장의봉 증언(2007.3.20) ; 조공천 증언(2006.5.18) ; 김창부 증언(2006.5.24) ; 채만화 증언(2006.5.19) ; 오용승 증언(2006.5.17) ; 오명봉 증언(2006.5.18) ; 홍공립 증언(2006.6.29) ; 김정아 증언(2006.5.18) ; 이정순 증언(2006.6.28).

124) 변OO 증언(2006.6.1).

125) 진실화해위원회의 『제주예비검속사건(첫알오름) 진실규명결정서』(2007)에 따르면, 모슬포 지역 예비검속자들은 대정읍 상모리 첫알오름에 위치한 일제시대 탄약고터에서 총살 암매장되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 유해발굴사업’(2단계) 사업으로 2007년 8월 3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주국제공항 남북활주로 서북측지점(구 정뜨르비행장)에 대한 유해발굴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총 123구의 유해와 도장, 의복 단추, 안경, 벨트(버클), 지갑, 담배파이프 및 탄두와 탄피 등 다수의 유류품이 발굴되었다. 발굴된 123구의 유해에 대한 유전자감식 결과 13구의 유해에 대한 신원이 확정되었으며, 신원이 확

등급분류에 기초한 것이었다.¹²⁶⁾ 이는 경찰이 예비검속자들을 구금한 뒤 등급을 분류한 사실, 그리고 군인들이 명단을 가지고 창고에 구금 중인 예비검속자들을 호명하여 트럭으로 이송한 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서귀포 지역의 예비검속사건

서귀포 지역에서는 남원면·서귀면·중문면에서 예비검속사건이 발생하였다. 서귀포경찰서와 관할지서 경찰, 그리고 해병대 등은 1950년 6월 26일~8월 초순 경에 지역 주민 가운데 예비검속 대상자들을 연행하여 경찰서 및 지서 유치장, 서귀포 절간고구마창고, 제주읍 주정공장 창고 등에 구금하였다.

서귀포 지역의 예비검속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남원면에서는 남원·위미지서 경찰이 중심이 되어 남원리·신흥리·의귀리·신례리 주민들을 예비검속하여 구금하였다. 피해 유족 고태림은 당시 부친의 연행 및 구금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버지는 1950년 6월 27일 밤, 마을 보초를 서러 나갔다가 남원지서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그날 남원리에서 고영생·현순평·한태고·현인권 등 5명 정도가 같이 잡혀서 서귀포 절간고구마창고에 구금되었는데 그 중 한태고·현인권은 약 1주일 후에 먼저 석방되어 돌아왔습니다.”¹²⁷⁾

또 같은 피해 유족인 김경중·김병수·정병순·고창남·고창부의 증언에 따르면, 의귀리 예비검속자들은 1950년 6월 26일 새벽에 집으로 찾아온 의귀출장소

인된 유해는 남원면 의귀리 양봉석·고우삼·고성대, 중문면 강정리 강여염·김중안, 중문면 상예리 진승노, 중문면 하원리 강세규, 서귀면 서흥리 고행준, 서귀면 호근리 김희전, 대정면 신평리 송대길, 대정면 안성리 조인범, 한림면 한림리 김원석, 제주읍 일도리 현천오 등 총 13명이다. 이 중 송대길, 조인범, 김원석은 모슬포 지역 예비검속자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때 모슬포 지역 예비검속자들은 대정면 상모리 첫알 오름에 위치한 일제시대 탄약고터와 제주읍 정뜨르비행장에서 각각 총살 암매장된 것 보인다. 진실화해위원회, 위의 책 ; 제주대학교·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 2010, 『43희생자 유해발굴사업 2단계 1차 감식 보고서』 참조.

126) 문OO 증언(2007.8.17) ; 고OO 증언(2007.1.15) ; 고OO 증언(2006.9.22).

127) 고태림 증언(2009.5.26).

경찰 및 급사에게 연행되었다.¹²⁸⁾ 고창부는 아버지가 경찰에 연행된 후 할머니가 의귀출장소 주임 현OO을 찾아가 아버지의 석방을 요청했다가 고초를 겪었다고 말하였다.¹²⁹⁾ 피해 유족 양문옥의 아버지는 신례파견대 급사 김OO으로 부터 지서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고 나간 후에 위미지서에 3일 동안 구금되었다가 서귀포경찰서로 이송되었다.¹³⁰⁾ 피해 유족인 안시생의 남편은 마을 보초를 서러 나갔다가 위미지서에 연행되어 하루 정도 구금된 뒤에 서귀포 절간고구마창고로 이송되었다.¹³¹⁾

중문면에서는 중문지서가 강정리·중문리·하예리·대포리·월평리·회수리,¹³²⁾ 도순지서가 도순리·하원리를 각각 담당하여 주민 가운데 예비검속 대상자를 연행하였다.¹³³⁾ 서귀면에서는 서귀포경찰서와 해병대가 직접 주민들을 예비검속하여 구금하였다.¹³⁴⁾

서귀포 지역의 예비검속 과정에서도 경찰만이 아니라 경찰서·지서·출장소·파견대의 급사,¹³⁵⁾ 리사무소 직원,¹³⁶⁾ 마을 이장 등이 동원되거나 참여했다.¹³⁷⁾ 피

128) 김경중 증언(2009.10.26) ; 김병수 증언(2009.5.22) ; 정병순 증언(2010.2.9) ; 고창남 증언(2009.5.22) ; 고창부 증언(2009.5.22).

129) 고창부 증언(2009.5.22).

130) 또한 양정성은 남편과 시동생이 신례파견대의 호출을 받고 나간 후 연행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양정성 증언(2009.5.25) ; 양문옥 증언(2006.6.15).

131) 안시생은 남편의 연행 및 구금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하루는 남편이 보초를 서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니다. 다음날 아침에 신례파견대에 근무하는 급사 김OO이 집으로 찾아와서는 우리 남편이 지서에 있으니 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옷을 가지고 급사를 따라가보니 남편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위미지서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음식을 가지고 지서로 찾아갔더니 이미 서귀포 절간고구마창고로 이송한 후였습니다. 남편이 서귀포 절간고구마창고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위미지서로부터 돈을 내라는 연락을 받고, 지서로 2~3회 냈습니다.” 안시생 증언(2009.6.25).

132) 윤태효는 형이 중문지서 경찰에 연행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김경출은 남편이 상예출장소 경찰 및 마을 이장 김OO와 같이 온 상예출장소 급사를 따라 나갔다가 연행되었다고 증언하였고, 오경대는 집으로 찾아온 상예출장소 순경 2명이 중문지서에서 찾는다며 아버지를 데리고 갔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홍창현은 상예출장소 오OO 경찰이 집으로 와서 아버지를 데리고 갔는데, 당일 상예리에서만 7~8명이 잡혀갔다고 증언하였다. 김경출 증언(2009.4.20) ; 오경대 증언(2009.4.14) ; 홍창현 증언(2009.4.21) ; 윤태효 증언(2010.1.8).

133) 임남용·이방춘은 도순리 주민 이평규·이을생·백문옥·백문주·장인관·이인순·김팔부 등이 1950년 6·25 발발 2~3일 후 도순지서에 연행되었다고 증언하였다. 특히 김경부는 형이 도순지서에 연행된 날 친분이 있는 군인의 도움으로 지서에서 형을 데리고 나왔는데 다음날 다시 연행되어 서귀포경찰서로 이송됐다고 증언했다. 또한 하원리에서 예비검속된 주민들은 1950년 7월 25일 무장대의 하원리 습격, 민가 방화사건이 발생한 직후 도순지서 경찰에 연행되었다. 김경부 증언(2009.4.17) ; 이방춘 증언(2009.4.14) ; 임남용 증언(2010.4.2) ; 진원병 증언(2009.5.27) ; 이영희 증언(2010.4.2).

134) 「해병대 예비검속자 신병 인수 보고의 건」(서서사 제2026호, 1950.9.11) ; 「예비검속자 일부 석방보고의 건」(서서사 제2028호, 1950.9.13) ; 「예비검속자 처리에 관한 건」(서서사 제2150호, 1950.11.30),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첩』(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 현세준 증언(2010.4.2) ; 강완철 증언(2009.4.17) ; 현세준 증언(2010.4.2) ; 허병옥은 시아버가 1950년 6월 26일 새벽 3시경 집에서 찾아온 경찰에 연행되었다고 증언하였으며, 현도원은 형이 집으로 찾아온 서홍출장소 경찰에 연행되었다고 증언하였다. 허병옥 증언(2009.4.15) ; 현도원 증언(2009.8.19).

해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군경당국의 예비검속자 연행 기간은 1950년 6월 26일부터 8월 초순까지였다. 서귀포 지역의 예비검속은 대부분은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초순 사이에 실시되었으나, 중문면 하원리의 경우는 1950년 7월 26일~8월 초순 사이에 이루어졌다.¹³⁸⁾

서귀포 지역에서 예비검속된 민간인들은 경찰서에서 사용하던 임시 수용소인 절간고구마창고와 도순지서·중문지서·위미지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다만, 일부 예비검속자들은 연행 즉시 제주시로 이송되어 주정공장 창고에 구금되었으며, 또 서귀포 절간고구마창고에 구금되었다가 제주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된 경우도 있다. 예비검속사건으로 도순지서에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임남용은 당시 연행 및 조사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6·25가 딱 나니까 한 2~3일 후에 도순지서에서 우리 부락의 젊은이들을 덮어놓고 잡아갔습니다. 저도 잡혀갔습니다. 그때 같이 잡혀간 분들이 강윤택·장인관·이평규·이을생·백문옥·백문주·이인순·김팔부·강두현 등입니다. 우리는 도순지서 뒤에 있는 초가 막사에 수용이 됐는데 한명씩 불러 나가서 지서 사무실에서 취조를 받았습니다. 당시 지서 주임은 강OO였고, 취조는 송OO 순경이 했습니다. 송OO은 잡혀온 사람들을 한명씩 불러낸 뒤 일단 양손을 묶어서 천장에 매달고 막 때리면서 4·3사건 당시 있었던 사건들을 다시 취조했습니다. 내용은 남로당에 가담을 했느냐! 도로 차단을 했느냐! 전주 절단을 했느냐! 산에 쌀을 올렸느냐! 하는 것들이었습니다.”¹³⁹⁾

또한 예비검속사건으로 서귀포 절간고구마창고에서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현세준은 구금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35) 김경중 증언(2009.10.26) ; 김병수 증언(2009.5.22) ; 정병순 증언(2010.2.9) ; 고창남 증언(2009.5.22) ; 고창부 증언(2009.5.22) ; 양봉천 증언(2009.5.26) ; 현경삼 증언(2009.6.22) ; 고봉원 증언(2008.7.17) ; 안시생 증언(2009.6.25) ; 양정성 증언(2009.5.25) ; 양문옥 증언(2006.6.15) ; 정수현 증언(2010.1.8) ; 양금석 증언(2010.1.7).

136) 고옥춘은 시아버지가 1950년 6월경 집으로 찾아온 리사무소 직원에게 연행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고옥춘 증언(2009.10.26).

137) 강정선은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온 마을 이장을 따라 나갔다가 연행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강정선 증언(2010.1.28) ; 김경출 증언(2009.4.20).

138) 하원리에서 예비검속된 주민들은 1950년 7월 25일(음력 6월 11일) 무장대의 하원리 습격, 민가 방화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도순지서 경찰에 연행되었다. 오두일 증언(2010.10.26) ; 진원병 증언(2009.5.27) ; 이영희 증언(2010.4.2).

139) 임남용은 자신이 도순지서 무보수 경관으로 1개월간 지서 보조 근무를 서고 토벌을 다녔던 전력을 들어 죄가 없음을 주장하여, 연행 당일 강윤택과 함께 석방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임남용 증언(2010.4.2).

“저는 1950년 6·25 발발 후 해군정보원에 재검속 되어 서귀포 절간고구마창고에 구금되었습니다. 내가 창고에 들어가는 날, 창고에 구금되어 있던 사람들이 불러나갔습니다. 그 날 나간 사람 중에 조성환·현봉규씨도 있었습니다. 내가 창고에 들어간 후에는 사람들이 불러나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 어떠한 조사나 취조도 없이, 약 1~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다가, 다른 구금자들은 석방이 됐고, 나를 포함해 4명만 서귀포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서귀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약 2~3개월 정도 더 구금되어 있다가, 평양탈환이 된 후에 마지막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때 평양탈환이 되어서 석방을 시켜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¹⁴⁰⁾

서귀포경찰서로 연행된 예비검속자 중 일부는 다시 제주경찰서로 이송되었다. 피해 유족 김인순은 아버지가 서귀포 절간고구마창고에 구금되었다가 제주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었으며, 당시 할머니가 전복 등을 마련해서 제주경찰서로 몇 번씩 면회를 갔지만, 가져간 음식만 빼앗고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피해 유족 윤태효는 형이 중문지서 경찰에 연행된 후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자, 아버지가 제주경찰서로 면회를 다녀왔다고 증언하였다.¹⁴¹⁾ 피해 유족 강완철의 증언에 따르면, 부친 강성모는 해병대에 연행되어 곧바로 제주읍 주정공장 창고에 구금되었는데, 당시 부친의 연행 및 구금상황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는 1950년 6·25 발발 며칠 후 서귀면사무소 면장실에서 근무 중에 연행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연행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서귀포경찰서를 찾아가 아버지를 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귀포경찰서 경찰들은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제주읍 주정공장 창고에 구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어머니가 매일같이 주정공장으로 아버지 면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버지께서 ‘죄가 없으니까 금방 나간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셨다는데, 이미 온 몸은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문으로 몸이 상하셨던 겁니다.”¹⁴²⁾

당시 예비검속자들이 구금된 서귀포 절간고구마창고 및 지서 유치장 경비는

140) 서귀포경찰서는 1950년 9월 7일, 해병대로부터 인수받은 예비검속자 15명에 대해 당시 주재 CIC 파견대와 협의 조사 후, 9월 13일 현세준, 고찬욱을 제외한 12명을 석방하였다. 현세준은 서귀포경찰서 유치장에 계속 구금되었다가 11월 26일경 석방되었다. 「해병대 예비검속자 신병 인수 보고의 건」(서서사 제2026호, 1950.9.11) ; 「예비검속자 일부 석방보고의 건」(서서사 제2028호, 1950.9.13) ; 「예비검속자 처리에 관한 건」(서서사 제2150호, 1950.11.30),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 현세준 증언(2010.4.2).

141) 김인순 증언(2009.10.26) ; 윤태효 증언(2010.1.8) ; 윤제식 증언(2009.4.20).

142) 강완철 증언(2009.4.17).

경찰 및 경찰 소속 의용소방대원들이 담당했다.¹⁴³⁾ 예비검속자들이 구금된 창고에서 가족들의 면회나 접촉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었다. 구금자들의 식사는 주로 경찰이 가족들로부터 양식을 거두어 제공되었으며, 일부 구금자 가족들은 면회를 목적으로 갈아입을 옷과 사식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¹⁴⁴⁾ 일반적으로 지서 유치장 구금자들의 식사는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하루에 두 번 가족들이 직접 제공하였다. 피해 유족 고흥길은 형이 예비검속되자, 서귀포 절간고구마창고로 형을 만나러 다녔다. 그는 당시의 구금 장소와 상황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형은 서귀포 절간고구마창고에 구금이 됐습니다. 당시 어른들은 창고에 접근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3일에 한번 꼴로 면회를 다녔습니다. 창고 건물 약 7미터 정도 앞에 어른 키보다 훨씬 높게 철조망을 쳐서 그 철조망에 문을 만들어 놓고 총을 멘 간수가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 면회를 가면 우선 간수가 누굴 만나러 왔는지를 물었습니다. 형님 이름을 얘기하면 간수가 창고를 향해 형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형님이 창고 문 앞으로 나오고, 나는 가져간 보리떡을 문 앞으로 던져 주는 겁니다. 면회를 가도 서로 얼굴만 볼 수 있을 뿐, 얘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10회 이상 면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1950년 음력 6월 13일 창고에 구금됐던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바다에서 수장된 것으로 생각해서 소장, 대상 3년 상을 지냈습니다.”¹⁴⁵⁾

서귀포 지역의 예비검속 과정에서도 개인적인 원한관계가 작용하여 예비검속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귀면 서귀리 강성모의 경우인데, 그는 당시 현직 면장이었다.¹⁴⁶⁾ 유족 강완철은 당시 아버지 강성모의 검속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당시 서귀포에 주둔한 해병대가 민폐가 심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부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 몇 마리, 고사리 몇백관을 준비하라고 강요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민폐를

143) 고태림은 사건 당시 서귀면에 살고 있던 큰어머니를 통해 절간고구마창고에 구금된 아버지께 사식을 넣었는데, 창고 문지기 부윤옥이 아버지와 6촌이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고태림 증언(2009.5.26) ; 김재종은 숙부가 서귀포 절간고구마창고에 구금되었을 당시 창고 보초 강창중 경찰을 통해서 갈아입을 옷을 전해줄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김재종 증언(2009.4.14).

144) 오유규는 서귀포 절간고구마창고로 직접 면회를 가서 남편에게 갈아입을 옷을 건네줬다고 증언하였다. 오유규 증언(2010.10.27) ; 이방춘은 아버지가 창고 구금 당시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면회를 가서 아버지 얼굴을 보고 돌아왔다고 증언하였다. 이방춘 증언(2009.4.14).

145) 고흥길 증언(2009.4.20).

146) 강성모는 해방 후 독립촉성국민회 활동에 참여했으며, 제주감찰청 보안과장 및 인사과장을 지냈다. 이후 친일파 처단을 위한 반민특위(反民特委)가 구성되자 상경해 황해도 조사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반민특위가 강제 해산되는 바람에 고향인 서귀포로 내려와 서귀면장을 맡게 되었다. 강완철 증언(2009.4.17).

끼치니, 우리 부친이 아주 완강한 어른이셨는데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순응하지 않으셨습니다. 해병대 책임자에게 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폐가 심하다는 얘기를 전했는데 그게 화근이 되어서 예비검속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예비검속이 된 분은 우리 부친 한명 뿐이었습니다.”¹⁴⁷⁾

이와 함께 하원리 일부 주민들에 대한 예비검속도 경찰의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원리에서 예비검속된 주민들은 1950년 7월 25일 무장대의 하원리 습격과 민가 방화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도순지서 경찰에 연행되었다.¹⁴⁸⁾ 마을 주민 이영희는 당시 경찰의 주민 연행 및 구금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6·25전쟁이 난 후에 우리 하원리에 습격이 들어서 하원리 99거리가 모두 불이 났습니다. 이 습격 사건 후에 도순지서 경찰들이 마을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조사를 해서 김OO과 아들 김OO을 잡아갔습니다. 그때 김OO 집만 불이 안났는데, 김OO 부자가 산 쪽 도들하고 연결이 된 것이라고 그 두 명을 잡아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습격 사건이 있고 나서 일주일 만에 나는 해병대 3기생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 후에 다른 병사로부터 내가 군 입대 한 며칠 후에 하원리에 자수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던 사람들이 다 잡혀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강세규·오동식·오두석·조무철·진원택입니다.”¹⁴⁹⁾

서귀포 지역의 예비검속자들도 경찰의 심사를 거쳐 D에서 A까지 4개 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가운데 D와 C등급은 해병대에 송치되었다. 물론 예비검속자의 송치는 서귀포 경찰서가 작성한 예비검속자 명부와 등급분류에 기초한 것이었다. 예비검속자들은 1950년 7월 중·하순경, 8월 중순경 최소 2회에 걸쳐 해병대에 송치되었다. 1차 송치는 1950년 7월 16일~29일 경, 2차 송치는 8월 10

147) 강성모 서귀면장은 해병대의 부식 마련 요구에 순응하지 않고 반발했다가 군의 미움을 사서 예비검속되었다. 서귀포에 주둔한 해병대가 자신들의 부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 몇 마리, 고사리 몇 백 관을 준비하라고 강요하는 등 주민들에게 민폐를 일삼았는데, 강성모 면장이 군 책임자에게 이것을 문제 삼았다가 미움을 받아 예비검속 됐다는 것이다. 이후 서귀면에서는 강성모 면장이 고사리 공출 때문에 희생되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지금까지도 ‘고사리면장’, ‘고사리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또한, 강성모 서귀면장이 해병대에 연행되었다는 사실은 경찰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건 당시 서귀포경찰서 경무과에 근무하던 정OO는 “서귀면장은 군대의 식량조달 부탁을 거절했다가, 검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강원철 증언(2009.4.17) ; 정OO 증언(2007.8.16) ; 구산석 증언(2010.3.26) ; 송세중 증언(2010.3.29).

148) 오두일 증언(2010.10.26) ; 진원병 증언(2009.5.27) ; 김동원 증언(2010.3.29) ; 이영희 증언(2010.4.2).

149) 이영희 증언(2010.4.2).

일~20일 경이었다. 두 차례에 걸쳐 송치된 예비검속자들은 제주읍 정뜨르 비행장에서 총살되거나 제주읍 산지항 근처 바다에 수장되었다.¹⁵⁰⁾

150) 제주특별자치도의 '4·3희생자 유해발굴사업'(2단계) 결과, 제주국제공항 남북활주로 서북측지점(구 정뜨르비행장)에서 서귀포경찰서 예비검속자들의 유해 일부가 발굴되었다.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남원면 의귀리 양봉석·고우삼·고성대, 중문면 강정리 강여엽·김중안, 중문면 상예리 진승노, 중문면 하원리 강세규, 서귀면 서흥리 고행준, 서귀면 호근리 김희전이다. 제주대학교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 앞의 책 ; 진실화해위원회, 『제주예비검속사건(제주시·서귀포시) 진실규명결정서』(2010) ;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431~432쪽.

IV. 제주 예비검속과 집단학살의 구조와 성격

1. 예비검속과 학살의 명령 계통

1950년 6월 25일 내무부 치안국은 치안국장 명의로 전국 경찰국에 보낸 비상통첩, 곧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에서, “전국 요시찰인 전원을 경찰에서 구금할 것”을 지시하였다.¹⁵¹⁾ 치안국은 인원 수용관계를 고려하여 ‘각 지서에서는 요시찰인 중 특히 의식계급으로써 사찰대상이 된 자에 한하여 우선 구속하고 성명, 연령, 주소를 명기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치안국은 이후에도 치안국장 이름의 통첩을 통해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할 것을 계속 지시하였다.¹⁵²⁾

치안국의 통첩에 따라 경찰은 곧바로 예비검속을 실행에 옮겼다. 제주도경찰국은 치안국의 통첩에 따라 관내 각 경찰서에 불순분자 또는 요시찰인을 예비검속하거나 검거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¹⁵³⁾ 각 경찰서는 과거 도피자·자수자·귀순자 명부, 인민위원회 관련 명부, 남로당 관련 명부 등 4·3사건 관련 사찰기록을 토대로 예비검속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행하였다.¹⁵⁴⁾ 이러한 사실은 예비검속이 한국전쟁 발발 직전 경찰의 일상적인 사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151)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査 제1799호, 6월 25일 14:50),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152) 6월 29일 「불순분자 구속의 건」, 6월 30일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 7월 11일 「불순분자 검거의 건」,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제호, 1950.8.6);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濟地檢 제168호, 1950.8.7),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153)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예비검속 시행과정에서, 제주도경찰국과 관할 경찰서가 상호 주고받은 공식문서는 주로 성산포경찰서가 보고한 문건이 대부분이다. 「예비검속 추가자 보고의 건」(1950.6.27); 「요시찰인 검거 구속자 보고의 건」(1950.6.27);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대 6월 25일부 城署査 제1799호」(1950.6.29); 「요시찰인 검거 구속자 명부 제출의 건」(城署査 제 1809호, 1950.6.30) 등.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154) 김OO 증언(2007.6.21); 김OO 증언(2007.5.11); 고OO 증언(2007.4.19); 고OO 증언(2006.9.22); 강OO 증언(2007.4.20); 김OO 증언(2006.9.20); 문OO 증언(2007.8.15).

제주지역의 예비검속 과정에서 경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국전쟁 전후 시기 국가폭력을 수행한 집단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세력은 경찰과 군이었다.¹⁵⁵⁾ 이러한 국가폭력 기구는 한국전쟁 시기 예비검속 사건에서도 다시 작동되었다. 특히 경찰은 민간인 관련 국가폭력을 수행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집단이었는데, 예비검속 사건에서는 경찰 부서 가운데 사찰과·사찰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¹⁵⁶⁾

사찰계 경찰은 예비검속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연행·구금하고, 대상자들을 사정(査定)하여 등급별로 분류하여 제주지구 계엄사령부에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의 공식문서에서도 나타난다. 제주지역에서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은 주로 사찰과·사찰계에서 담당하였다. 당연히 이들 공문의 접수나 보고 형식은 제경사(濟警査-제주도경찰국 사찰과), 제서사(濟署査-제주경찰서 사찰과), 성서사(城署査-성산포경찰서 사찰과), 서서사(西署査-서귀포경찰서 사찰과), 모서사(募署査-모슬포경찰서 사찰과)로 표기되었다.¹⁵⁷⁾

경찰은 예비검속 대상자들을 “사찰대상 인물”, “요시찰인” 등으로 명명하였다.¹⁵⁸⁾ 제주지역 사찰 경찰은 전쟁 이전부터 과거 좌익이나 4·3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요시찰인 명부, 자수자 명부, 도피자 명부 등을 작성하고 동향을 일상적으로 감시해 왔으며, 이는 전쟁 후 예비검속으로 연결되었다. 경찰의 사찰업무는 전쟁 이전과 이후 시기에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찰업무의 연속성은 경찰이 전쟁직후 치안국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예비검속자들을 연행하여 수용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제주지역에서는 1950년 6월 27일부터 말단 지서에서 구속한 예비검속자 인적

155) 이에 대해서는 안진, 1962, 『미군정기 억압기구 연구』, 새길 참조.

156) 「예비검속자 출두의뢰의 건」(陸本情濟C特 제2호, 육군본부 정보국 제주지구CIC장, 제주도경찰국장 귀하, 1950.9.3),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157) 「요시찰인 일제검거에 대한 부민의 언동지건」(濟警査 제6206호, 1950.7.1); 「요시찰인 검거 구속자명부 제출의 건」(城署査 제1809호, 1950.6.30); 「공무원 구속자 보고의 건」(西署査 제1880호, 1950.7.7); 「전 제주지구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濟署査 제2899호의 5, 1950.7.12); 「예비검속자 석방의 건」(募署査 제1945호, 1950.7.20),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158) 「예비검속자 처리의 건」(濟警査 제6670호, 1950.10.26); 「불순분자 검거의 건-대 7월 1일 암호전보 제19호」(제호 1945호, 1950.8.4. 입안);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제호 1950.8.6. 입안);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査 제17995호, 6월 25일 14:50); 「요시찰인 검거 구속자명부 제출의 건」(城署査 제1809호, 1950.6.30),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사항(이름, 본적, 주소, 직업, 나이)이 경찰서에게 보고되었고,¹⁵⁹⁾ 검속자 명부도 일정한 양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되었다.¹⁶⁰⁾ 제주지역 각 경찰서장은 6월 30일 제주도경찰국장에게 관내 전체의 “요시찰인 예비검속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¹⁶¹⁾ 제주도경찰국장은 다시 7월 13일 각 지역 경찰서장에게 공문을 보내 전체의 예비검속자 명부를 작성하여 16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¹⁶²⁾ 경찰의 예비검속 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제주도경찰국장은 제주지구 계엄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관하 각 서장에게 예비검속자 명부 제출을 지시했는데, 명부는 ① 종별(種別) ② 본적·주소 ③ 성명 ④ 연령 ⑤ 성별 ⑥ 검속일시 ⑦ 범죄개요 ⑧ 자수 후 항목에 따라 개인별로 관련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었다.¹⁶³⁾ 여기에서 ‘범죄개요’와 ‘자수 후’ 항목은 예비검속자 개인에 대한 과거 경력, 그리고 현재 동향을 기재한 내용으로 경찰의 사찰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경찰은 예비검속을 비밀업무로 취급하고 집행하였다. 경찰 사찰과·사찰계에서는 예비검속을 비밀업무로 취급했기 때문에 관련 공문의 접수/발송과정에서도 ‘사찰과 비밀’을 뜻하는 ‘사비(査秘)’라는 표기를 썼다.¹⁶⁴⁾ 경찰은 예비검속자 검거를 “절대 극비로 취급”하였으며, ‘다른 관공서에 대해서는 일절의 연락을 취하지 않고’ 시행하였다.¹⁶⁵⁾ 이러한 폐쇄적인 비밀주의 관행은 당시 사찰경찰 업무

159) 성산포경찰서 관할 김녕지서 주임은 이미 1950년 6월 27일에 예비검속 추가자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6월 25일 치안국장 지시 직후부터 예비검속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비검속 추가자 보고의 건」(1950.6.27) ;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대 6월 25일부 城署査 제1799호」(수신번호 1041, 1950.6.29) 등,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160) 초기 작성된 예비검속자 명부는 ① 검속일시 ② 검속자(주소·성명·연령·성별·직업) ③ 검속사유 ④ 비고 항목으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명부는 나중에 ① 종별(種別) ② 본적·주소 ③ 성명 ④ 연령 ⑤ 성별 ⑥ 검속일시 ⑦ 범죄개요 ⑧ 자수 후 항목으로 점점 더 구체화되었다.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161) 「요시찰인 검거 구속자명부 제출의 건」(城署査 제1809호, 성산포경찰서장 경감 문형순, 제주도경찰국장 좌하, 1950.6.30),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162) 「전 제주지구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에 대한 건」(제6294호, 1950.7.13. 입안),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163) 「(사찰) 전 제주지구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에 관한 건」(각 서장, 1950.7.9. 城署査 접수),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164) 「예비검속자 유가족의 동향에 대한 부민 언동에 관한 건」(城署査 제2004호, 1950.7.25),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165)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제호, 1950.8.6) ;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濟地檢 제168호, 1950.8.7),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자체가 갖는 고유한 속성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예비검속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추진되었던 점도 일정하게 반영되었다.

제주지역 경찰의 예비검속과 관련된 명령계통은 지서(주임) → 경찰서(장) → 제주도경찰국(장) → 내무부 치안국(장)이었다. 예비검속 업무를 가장 말단에서 집행하는 지서는 경찰서, 경찰서는 경찰국, 경찰국은 치안국의 명령이나 지시를 받았다. 제주지역 경찰차원에서 예비검속자 처리 권한은 경찰국장이 갖고 있었다. 제주 각 지역 경찰서는 예비검속자 구속 또는 석방에 대해 제주도경찰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¹⁶⁶⁾ 각 경찰서는 제주도경찰국에 예비검속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항상 보고했으며,¹⁶⁷⁾ 예비검속자를 검거할 경우에도 범죄개요와 사정(査定)평가 결과를 담은 명부를 만들어 보고했다.¹⁶⁸⁾ 또한 각 지역 경찰서는 예비검속자가 석방된 뒤에도 동향을 사찰하고, 그 결과를 경찰국에 보고하였다.¹⁶⁹⁾

제주도경찰국장은 내무부 치안국의 명령을 받아 관내 각 경찰서장에게 지시하고, 그 결과를 다시 치안국장에게 보고하는 중간 명령권자였다. 제주도경찰국장은 비록 계엄령 하에서 제주지구 계엄사령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지만, 경찰의 지휘체계에 따라 항상 치안국장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았다.¹⁷⁰⁾

제주지역의 예비검속은 계엄령이 실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비상계엄령의 공포로 행정·사법사무에 대한 관장권이 계엄사령부로 이관되자, 계엄사령관이 예비검속 업무의 지휘·감독권을 갖게 되었다.¹⁷¹⁾ 제주지역의 경우, 해병대사령부가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1950년 6월 25일 당일에 계엄령을 실시하였지

166) 「구속 급 석방에 관한 건」(제호, 경찰국장, 각 경찰서장, 1950.7.28. 입안),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167) 「불순분자 미예비검속의 건」(濟署査 제2972호, 제주경찰서장 총경 유근익, 제주도경찰국장 좌하, 1950.7.28),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168) 「예비구속자 조치에 관한 건」(濟署査 제3074호, 제주경찰서장 총경 유근익, 제주도경찰국장 좌하, 1950.8.22) ; 「예비검속자 명부 제출의 건」(濟署査 제2899호의 14·15·16·17, 제주경찰서장 총경 유근익, 제주도경찰국장 좌하, 1950.9.7 ; 9.12 ; 9.13 ; 9.15),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169) 「예비검속자 석방의 건」(募署査 제1945호, 모슬포경찰서장, 제주도경찰국장 좌하, 1950.7.20),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170) 「진명 : 불순분자 검거의 건-대 7월 11일 암호전보 제19호」(제호, 1950.8.4. 입안),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171) 계엄법에서는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내의 모든 행정 및 사법사무를 관장(계엄법 제11조)하며, 해당 지역내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계엄법 제12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법률 제69호, 1949.11.24), 제11조제12조.

만, 곧바로 예비검속 업무를 감독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경찰의 공식기록에 따르면, 제주지구 계엄사령부가 예비검속 업무를 지휘, 감독하기 시작한 것은 대개 7월부터였다.

1950년 7월부터 제주지구 계엄사령부에서 예비검속 업무를 직접 감독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계엄사령관(해병대사령관)은 지휘 명령계통에서 최고 결정권자였다. 제주에서 예비검속자 처리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계엄사령관이 갖고 있었다. 제주지구 계엄사령관은 7월 6일 제주도경찰국장에게 통첩을 보내 전체 예비검속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제주도경찰국장은 양식에 맞추어 예비검속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산하 경찰서장에게 지시하였다.¹⁷²⁾ 제주지구 계엄사령부에서 예비검속 관련 실무업무는 주로 정보참모실에서 담당하였다.¹⁷³⁾ 경찰은 계엄령이 실시되면서 예비검속자의 병보석이나 입원치료 등 신병처리에 관련된 중요 사안은 모두 계엄사령부가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다.¹⁷⁴⁾

결국 제주에서 예비검속 업무에 관한 지휘·명령계통이 계엄사령부 → 경찰국 → 경찰서¹⁷⁵⁾로 체계화되면서, 계엄사령관이 예비검속자 처리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 제주도경찰국을 비롯한 각 경찰서는 예비검속 업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항상 계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처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예비검속자 집단살해라는 국가폭력의 가해과정에서 경찰보다는 계엄사령부가 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경찰은 전쟁발발 직후에 치안국의 지시를 받아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집단수용하였다는 점에서 가해의 간접책임이 있다. 이에 비해 계엄사령부는 예비검속자 처리문제에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가해의 직접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

172) 「(사찰) 전 제주지구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에 관한 건」(각 서장, 1950.7.9. 城署査 접수) ; 「건명 :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1950.8.6),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173) 정보참모실(정보참모 소령 고길훈)은 1950년 6월 25일의 해병대사령부 개편 때 부터 본부에 소속되어 산하에 제1과, 제2과로 편제되었다.(「제주도부대편성및직위표(2)」, 해병대사령부, 앞의 책, 29쪽) 본 사건 시기 정보참모는 고길훈 소령(1950.4.1~1950.7.30)과 김두찬 중령(1950.7.30~1951.1.4)이 담당하였다. 「해병대장설 당시부터 6:25동란 중의 각급부대 지휘관 일람표」, 해병대사령부, 위의 책, 269쪽.

174) 「예비검속자 발병조치의 건」(제호 경찰국장, 제주도지구계엄사령관, 1950.8.12. 입안),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175) 제주지역 경찰로 근무했던 김OO은, 당시는 계엄령 상태였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이 모든 것을 장악했으며, 예비검속 명령도 계엄사령부로부터 경찰로 내려 왔다고 증언하였다. 김OO 증언(2001.8.7)

시 경찰이 예비검속자를 계엄사령관에게 이관하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제주도경찰국은 8월 4일 들어, 제주도 관내 요시찰인 가운데 820명을 예비검속하여 계엄사령관에게 이관하였다.¹⁷⁶⁾ 제주도경찰국은 “해병대 계엄사령부와 긴밀한 연락 하에 예비검속자 820명에 대한 범죄 경중 급별(級別) 심사를 극비리에 실시하여 사정(査定)하고 동 계엄사령관에게 이관”하였다고 밝혔다.¹⁷⁷⁾ 당시 예비검속자들이 집단살해되는 과정을 고려하면, 예비검속자의 군=해병대사령부로의 인계(송치)는 일종의 최종적인 처리, 곧 해병대에 의한 총살을 의미하였다.¹⁷⁸⁾ 제주지구 계엄사령부인 해병대사령부는 각 경찰서의 명부를 토대로 예비검속자를 송치 받아 집단 총살하였던 것이다.

2. 등급분류의 기준과 자의성

제주지역 경찰서는 예비검속 대상자들을 연행하여 집단수용한 다음, 이들을 심사하고 등급을 분류했다. 경찰이 1950년 6월 말부터 시작한 예비검속자 심사와 등급분류는 8월말까지 계속 진행되었다. 예비검속자 등급분류는 국가가 국민을 사상과 충성도에 따라 죽일 사람과 살려둘 사람을 나누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국가폭력의 야만성을 보여준다. 국가 입장에서 죽일 사람은 일종의 비국민이었다.¹⁷⁹⁾

경찰의 등급분류 기준은 이른바 과거 경력이었다. 경찰은 예비검속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범죄경력의 경중(輕重)에 따라 개인별로 심사하여 등급을 분류하였다.¹⁸⁰⁾ 경찰은 이러한 “종별(種別) 사정(査定)”을 거쳐 D·C·B·A의 4개 등급으

176) 「건명 : 불순분자 검거의 건-대 7월 11일 암호전보 제19호」(제호, 1950.8.4. 입안),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177) 「건명 : 불순분자 검거의 건-대 8월 4일 암호전보 제0064호」(제호, 1950.8.6. 입안),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178) 『형살(총살)자 및 가족 명부』(1968)에 수록된 진윤식(대정 신도)의 명부를 보면, “처형일시”는 “1950.7.20”, “처형장소”는 “모슬포”, “처형구분”은 “군에서 총살”, “비고”는 “예비검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형살(총살)자 및 가족명부』(서귀, 2905), 1968.

179) 김무용, 앞의 논문 참조.

180) 교OO 증언(2007.1.15) ; 김OO 증언(2006.9.20).

로 분류했다. 경찰 입장에서 D급이 가장 위험한 등급이었으며, A급으로 갈수록 범죄험의가 가벼운 등급이었다. 실제로 예비검속자 가운데 D등급은 대부분 집단 살해되었다. 경찰은 이러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금된 예비검속자들의 명부를 작성했다.¹⁸¹⁾ 경찰은 등급분류는 국가에 대한 위협성을 기준으로 죽일 사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으로서 국가폭력의 야만성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예비검속자들의 심사와 등급분류는 사찰경찰이 주로 담당했다. 사찰과·사찰계 경찰들이 예비검속자들의 등급별 평가를 담당했던 사실은 경찰문서에서 많이 나타난다.¹⁸²⁾ 1950년 8월 초에 제주도경찰국이 예비검속자 820명에 대해, 이른바 “범죄 경중”에 따라 급별(級別)로 사정(査定)하고 계엄사령관에게 이관한 업무도 사찰과에서 주관하였다.¹⁸³⁾ 대개 예비검속자를 D·C·B·A 4개 등급으로 분류한 평가는 사정관(査定官)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제주경찰서의 사정관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경찰서장, 사찰계장, 사찰주임이었다. 성산포경찰서의 경우는 취조관의 의견, 사찰주임의 심사, 서장의 판정을 거쳐 등급이 결정되었다.¹⁸⁴⁾

제주지역에서 사찰경찰이 주도한 예비검속자 등급분류는 집단살해와 실제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다. 사찰경찰이 분류하여 군 당국에 송치한 D·C등급 예비검속자는 대부분이 제주주둔 계엄사령부인 해병대에 의해 총살되었다.¹⁸⁵⁾ 비록 제주지구 계엄사령부가 예비검속자들을 집단총살하였지만, 이는 사찰경찰이 등급별로 분류하여 이송한 명단에 기초한 것이었다.¹⁸⁶⁾ 제주지역 사찰경찰의 판단이 예비검속자들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찰경찰은 비록 직접 가해자는 아니지만, 예비검속자 집단살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181) 문OO 증언(2007.8.17) ; 김OO 증언(2006.9.20).

182) 「예비검속에 대한 부민 여론의 건」(1950.8.7) ; 「예검자 재검토 보고의 건」(1950.8.9. 입안) ; 「예검자 재검토 보고의 건」(1950.8.18) ; 「예비구속자 조치에 관한 건」(濟署査 제3074호, 1950.8.22),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183) 「불순분자 검거의 건-대 8월 4일 암호전보 제0064호」(제호 1950.8.6. 입안),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184) 「예비구속자 재심사에 관한 건」(濟署査 제3136호, 1950.9.16) ;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城署査 제2071호, 1950.9.17),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185) 이러한 사실은 모슬포경찰서가 예비검속자를 분류하여 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당시 모슬포경찰서가 등급별 사정(査定)을 거쳐 분류한 D·C급은 군 송치 대상자로 결정되어 총살되었다. 「예비검속자명부제출의 건」(臺署査 제3107호, 모슬포경찰서장, 제주도경찰국장 좌하, 1950.9.4. 첨부자료),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186) 고OO 증언(2007.1.15) ; 고OO 증언(2006.9.22).

여기에서 경찰의 등급분류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경찰이 작성한 예비검속자 명부에는 개인별로 등급이 분류되어 있어 경찰의 분류 기준을 파악하는데 일정한 도움이 된다. 제주경찰서가 1950년 9월 4일 제주경찰국장에게 보고하려고 작성한 '예비검속자 명부'를 보면,¹⁸⁷⁾ 개인별 등급에 따라 '범죄개요'가 작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D급 및 B·A급으로 등급이 분류된 예비검속자들의 '범죄개요' 항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 '범죄항목'에 예비검속자들의 과거 경력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경찰이 작성한 예비검속자들의 이른바 범죄항목과 과거경력은 등급분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경찰의 예비검속자 등급분류는 가해기준, 곧 집단살해의 기준과 직결되어 있다. 사실 경찰의 예비검속자 등급분류 기준은 집단살해, 곧 가해이유를 알 수 있는 지점이다. 따라서 경찰의 등급분류는 예비검속자들을 집단살해할 때, 어떠한 요소를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했는가 하는 점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먼저 1950년 9월 4일의 예비검속자 명부에서 D등급에 대한 '범죄개요'를 보면, "등산 반도가담", "좌익사상 포지와 지하공작", "2·7사건 시 경찰관 불법체포와 감금, 총기탈취"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D·C등급은 총살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D등급에 대한 기준은 예비검속자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배경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경찰이 예비검속자들을 D등급으로 분류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요소가 일정하게 나타난다. 경찰이 D등급 분류에서 중시한 요소는 한라산에 입산하여 무장대 활동에 가담하거나 좌익 사상을 갖고 비합법 지하운동에 참여한 경우이다. 이와 함께 경찰관 체포나 무기탈취와 같은 치안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행위도 중시하였다. 경찰 입장에서 이러한 행위들은 수동적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으로서 현재에도 위험성이 일정하게 지속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등급분류의 기준은 경찰의 기준이지만, B·A등급으로 분류된 예비검속자들의 경력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B·A등급으로 분류된 예비검속자들은 대부분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50년 9월 4일의 예비검속자 명부에서 B·A등급으로 분류된 예비검속자들

187) 「예비검속자 명부 제출의 건」(西署査 제2016호, 서귀포경찰서장 김호겸, 제주도경찰국장 귀하, 1950.9.4) ; 「예비검속자 명부제출의 건」(濟署査 제3107호, 제주경찰서장 총경 유근익, 제주도경찰국장 좌하, 1950.9.5),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의 '범죄개요'를 정리하면 주요 내용은 <표 1> 과 같다.

<표 1> B·A 등급 예비검속자의 '범죄개요' (주요내용)

범죄개요 \ 등급	A등급	B등급
공통점	남로당원, 농민위원회 가입 및 간부, 인민위원회 가입 및 간부, 반도가담, 반도나 폭도에 식량·금품제공	남로당원, 농민위원, 인민위원회 간부, 반도가담, 반도 또는 남로당에 물자·식량·금품·정보제공
차이점	귀순, 폭도 은닉, 확고한 사상을 표현치 않는 중간적 태도, 군관민의 이간책을 한 사람	3·1사건 관련, 부녀동맹원, 민애청원, 5·10선거 반대, 인민자위대원, 도피자 또는 총살자 가족, 남로당원으로 도로파괴나 차단, 4·3관련으로 월북, 군경에 반감 및 반관·반정부적 태도

※ 출처 : 「예비검속자 명부제출의 건」(濟署査 제3107호, 제주경찰서장 총경 유근억, 제주도경찰국장 좌하, 1950.9.5)¹⁸⁸⁾

여기에서 경찰이 분류한 B·A등급을 D등급의 과거경력과 비교할 때, 일정한 차이점이 있다. 먼저 B·A등급의 공통점은, D등급의 중요한 기준이었던 한라산 무장대 참여나 경찰공격과 같은 직접 행동이 아니라, 대부분 과거 좌익단체에 가입한 경력이나 활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예비검속자들의 좌익단체 가입이나 활동이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상황에 강제된 수동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B·A등급에는 공통적으로 남로당이나 반도에 대한 물자·식량·금품·정보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주민들이 당시 군경과 무장대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던 강제된 협력행위이기도 했다.

B·A등급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경찰은 예비검속자 분류에서 B등급의 기준으로 제시한 과거경력에는 “4·3관련으로 월북”한 가족, “도피자 또는 총살자 가족”, “군경에 반감 및 반관·반정부적 태도” 등이 포함되었다. A등

188)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급의 기준에서는 “반도가담 및 귀순”, “폭도 은닉”, “반도나 폭도에 식량·금품 제공”, “확고한 사상을 표현치 않는 중간적 태도”, “군관민의 이간책을 한 사람” 등이 포함되었다. 여기에서 경찰이 B등급과 A등급의 차이를 얼마나 세심하게 고려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기준을 확정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경찰이 B등급과 A등급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 상호 차이를 두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예비검속자들의 정부에 대한 성향이나 태도를 구분할 때에도 “군경에 반감 및 반관·반정부적 태도”(B등급)와 “확고한 사상을 표현치 않는 중간적 태도”(A등급)를 구분하여 등급을 분류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이른바 “반도”에 가담했다가 귀순한 사람, “폭도”를 숨겨주거나 식량·금품을 제공한 사람, “중간적 태도”를 가졌거나 “군관민의 이간”시킨 사람을 가장 낮은 등급인 A등급으로 분류하였다. 경찰은 A등급에 포함된 이러한 내용을 당시 상황에서 가장 소극적이고 불가피한 행동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경찰 등급분류에서 각 등급에 따른 미세한 차이점도 발견되지만, 가장 중요한 지점은 D·C등급과 B·A등급의 경계선이였다. D·C등급으로 분류된 예비검속자들이 대부분 집단살해된 것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D·C등급과 B·A등급 사이의 경계선이 가장 중요한 기준선이였다. 이는 일종의 죽음의 경계선이자 생명선이기도 했다. 예비검속자 명부에서 기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면, 경찰이 예비검속자들의 등급별 차이와 분류에서 가장 중시한 기준은 과거보다 현재의 ‘위험성 여부’였다. 곧 예비검속자들의 과거경력이나 활동이 현재상황에서 얼마나 위험성과 지속성을 갖고 있는가를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입장에서는 D등급에서 제시한 한라산 입산이나 지하공작과 같은 경력을 가장 실제적인 위험성이 있는 행동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기준과 등급분류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등급분류에 객관적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경찰입장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D등급의 기준으로 제시한 한라산 입산이나 지하활동 내용도 얼마나 ‘현재적 실제적 위험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한라산에 입산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귀순하고 무장대 활동이 종료된 1950년 중순의 시점에서 과거 경력을 기준으로 예비검속자들의 등급을 분류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여기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언급이, 물론 등급분류에서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예비검속자들의 과거경력 자체가 대부분 경찰정보나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된 내용인지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예비검속자 가운데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D·C등급과 석방된 B·A등급은 서로 등급분류 기준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과거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¹⁸⁹⁾ 이러한 사실은 예비검속자들에 대한 총살과 석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등급분류가 자의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설정되었음을 보여준다. 경찰이 예비검속자 등급분류에서 가장 중시한 이른바 과거경력, 곧 ‘범죄개요’는 재판 등 객관적인 기준을 거쳐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대부분 의심이나 혐의 수준이었다. 비록 예비검속자 가운데 과거 4·3사건과 관련된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 범죄행위도 없는 상태에서 적법절차도 무시하고 과거경력에 대한 의심이나 혐의만으로 집단 살해한 것은 국가폭력의 야만성을 보여주는 행위였다.

나아가 경찰의 등급분류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개인의 성향이나 태도와 같은 지극히 주관적인 요소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모슬포 관내 예비검속자 명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명부에서 예비검속자들의 과거경력을 기재한 ‘범죄개요’나 ‘최근의 동향’을 보면, 대부분, “만일의 경우에는 폭동을 야기할 우려 농후함”, “특이한 동향 무하나 만일의 경우를 우려함”, “반성한 듯 하나 반관적 태도가 보임”, “반성적 태도가 보이나 만일을 우려함”, “협력하는 태도이나 주거지역으로 보아 만일의 염려”, “개선지정이 유하나 만일이 염려됨”, “평소태도 애매하며 만일의 경우에는 우려됨”, “제반사에 협력하는 듯 하나 동향 극히 애매함” 등으로 서술되어 있다. 심지어 “확고한 사상을 표현치 않고 중간적 태도를 취함”, “확실한 범증은 무하나 시국하 군관민의 이간책을 상습으로 하는 자임” 등이 기록되어 있다.¹⁹⁰⁾ 이는 경찰이 예비검속자들에 대한 자

189)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남로당원”이나 “반도가담” 등은 등급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들어 있다.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摹寫査 제3107호, 모슬포경찰서장, 제주도경찰국장 좌하, 1950.9.4), 첨부자료,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190)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摹寫査 제3107호, 모슬포경찰서장, 제주도경찰국장 좌하, 1950.9.4), 첨부자료,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신의 개인적인 인상이나 태도를 기술한 것으로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요소가 집단학살에 영향을 끼쳤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찰의 예비검속자 등급분류나 집단살해에서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요소가 영향을 끼쳤음은 관련 참고인이나 피해자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일부 경찰출신 증언자들은 예비검속 당시 경찰에 미움을 받거나 개인감정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다고 증언하였다.¹⁹¹⁾ 피해 유족들의 증언에서도 예비검속 대상자 선정의 자의성이 자주 나타난다. 바로 대표적인 내용은 예비검속 과정에서 기계적인 인원할당, 돈이나 ‘빚’으로 예비검속 대상자를 석방시켜 주는 사례 등이다. 피해 유족 오용승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또 어떤 일이 있냐고 하면 가서 점심값이라도 내주면 그 사람은 풀어주고 또 그 숫자를 보충하고 그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 수감되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빼주는 만큼 보충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¹⁹²⁾

피해 유족 김종권의 증언은 더 구체적이다.

“4·3사건 당시에 우리 형님이 잡혀갔습니다. 잡혀간 뒤에 어디 산에는 안 갔다 왔나! 돼지는 잡아서 안 올렸나! 이웃집은 냈다고 하는데, 너는 왜 안냈다고 하느냐! 하면서 취조를 당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센스가 빨랐습니다. 돈을 마련해서 한림지서에 갖다 주니까 형님을 바로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6·25가 터지고 나서 다시 잡혀 들어갔습니다. 또 다시 돈을 대어서 석방되어 나왔습니다.”¹⁹³⁾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예비검속자 등급분류와 집단살해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실, 자의성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비검속자들은 경찰이

191) 모슬포경찰서 두모지서에 근무했던 고OO은 사건 당시 ‘도망갈 사람은 이미 다 도망가고 한라산 공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지방에서 암전히 있던 사람들이 끌려가서 다 죽었다’고 증언하였다. 고OO 증언(2007.4.19); 강OO 증언(2007.4.20); 고OO 증언(2006.9.22); 문OO 증언(2007.8.15).

192) 오용승 증언(2001.12.27). 같은 피해 유족인 조정배의 증언도 비슷하다. “예비검속할 때, 한 부락에서 대충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잡혀갔다. 각 부락에서 무조건 한 10여 명씩 데려오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부락별로 인원배정). 우리 백조일손 유족을 보면 고산에서 11명, 용수에서도 비슷하고, 귀덕에서도 10여명쯤이다.” 조정배 증언(2002.1.17).

193) 김종권 증언(2001.11.30). 같은 피해 유족인 이순식의 증언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한OO은 예비검속 됐으나 돈을 써서 빠져나왔다. 그는 경찰 한OO의 친척이다. 아무튼 그가 혼자만 살아 돌아오자 다른 희생자의 어머니들은 ‘혼자만 살아왔다’며 그에게 손가락질을 했다.” 이순식 증언(2002.7.9).

분류한 등급에 따라 죽음(군 송치)과 생존(석방)이 결정되었다.¹⁹⁴⁾ 일반적으로 D·C등급은 군 송치 대상자로 분류되어 총살되었으며,¹⁹⁵⁾ B·A등급은 일부가 조기에 풀려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1950년 10월까지 계속 구금되어 있다가 석방되었다.¹⁹⁶⁾ 경찰의 예비검속자 심사와 분류, 그리고 군 송치는 1950년 8월 말~9월 초에 해병대사령부가 전투에 참가하기 위해 육지로 철수하면서 중단되었다. 1950년 9월 4일 현재, 제주지역 예비검속자 현황을 정리하면 <표 2> 와 같다.

<표 2> 1950년 9월 4일 현재 제주지역 예비검속자 현황

경찰서별 예비 검속자(수)	제주경찰서	모슬포경찰서	서귀포경찰서
A등급	69	13	43
B등급	113	59	47
C등급	15	0	13
D등급	9	4	7
계	206	76	110

※ 출처 : 「예비검속자 명부 제출의 건」(濟署査 제3107호, 제주경찰서장 총경 유근억, 제주도경찰국장 좌하, 1950.9.5) ; (西署査 제2016호, 서귀포경찰서장 김호겸, 제주도경찰국장 귀하, 1950.9.4) ; (募署査 제3107호, 모슬포경찰서장, 제주도경찰국장 좌하, 1950.9.4)¹⁹⁷⁾

제주도경찰국장은 1950년 10월 26일 치안국장에게, “중요한 사찰대상 인물을 예비검속”하여 “대부분은 당지 계엄사령부에서 처리”하고, 현재 관내 각 경찰서에서 87명을 검속하여 감시 중에 있다고 보고하였다.¹⁹⁸⁾

194) 이유근 증언(2006.7.27) ; 김창부 증언(2006.5.24) ; 조정배 증언(2007.4.17) ; 이순희 증언(2007.3.19); 양신하 증언(2006.11.17) ; 임근농 증언(2006.5.25) ; 양병익 증언(2006.5.24) ; 조공천 증언(2006.5.18) ; 양천익 증언(2006.12.14).

195)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募署査 제3107호, 모슬포경찰서장, 제주도경찰국장 좌하, 1950.9.4), 첨부 자료,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196) 『제주신보』, 1950.9.20·9.23 ; 「건명 : 예비검속자 처리에 관한 건」(제6670호, 경찰국장, 치안국장, 1950.10.26. 입안),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197)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198) 「건명 : 예비검속자 처리에 관한 건」(제6670호, 경찰국장, 치안국장, 1950.10.26. 입안), 『예비검속 관

3. 예비검속 대상자와 가해이유

제주지역 예비검속 대상자들의 성격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가 1949년 6월 과거 좌익세력을 전향시키려고 조직한 국민보도연맹의 가입자로 파악하였다. 제주 4·3위원회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국민보도연맹 조직을 예비검속 사건의 주요한 배경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가 보도연맹원과 반정부 혐의자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했으며, 제주지역에서도 예비검속자들에 대한 군 당국의 총살집행이 이루어 졌다고 서술하였다.¹⁹⁹⁾

당시 정부나 군경당국이 제주지역 예비검속 대상자들을 육지의 보도연맹원과 같은 집단으로 분류하고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는 한국전쟁 발발직후 내무부 치안국에서 작성된 예비검속 관련 공문서(통첩)에서도 요시찰인, 불순분자, 보도연맹원을 같이 취급하였다.²⁰⁰⁾ 제주지역 경찰은 치안국의 지시에 따라 예비검속을 실시했는데, “상부지시에 의해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하였다”고 언급하였다.²⁰¹⁾ 여기에서 보도연맹원에 대한 언급은 제주도경찰국장이 제주지방검사장에게, 상부지시에 의해 예비검속이 실시되었다는 일반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타난다. 곧 제주지방검사장이 예비검속자 명부 제출을 요구하면서 “보도연맹 급 요시찰인” 등에 대해 교양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자, 이를 거부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언급된 것으로 제주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내용은 아니었다.

예비검속 대상자들의 범주를 설정할 때, 제주지역의 경우, 육지와는 다른 특징이 발견된다. 당시 제주지역의 예비검속사건과 관련, 내무부 치안국과 제주도경찰국, 그리고 제주도경찰국과 관할 경찰서 사이에서 주고받은 공문서에서 제주지역 보도연맹(원)에 대한 내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²⁰²⁾ 또한 각 지역 경찰서에

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199) 제주지역의 보도연맹 조직 및 현황에 대해서는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423~424-340쪽 참조.
200)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제지검 제168호,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제주도경찰국장 귀하, 1950.8.7) ; 「불순분자 검거의 건」(제호 1950.8.6. 입안),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201) 「건명 : 불순분자 검거의 건-대 8월 4일 압호전보 제0064호」(제호, 1950.8.6. 입안) ; 「건명 :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제호, 경찰국장, 제주지방검사장, 1950.8.6. 입안),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서 예비검속 대상자들을 등급별로 사정(査定)하여 분류한 「예비검속자명부」,²⁰³⁾ 그리고 『형살(총살)자 및 가족 명부』²⁰⁴⁾ 등에서도 보도연맹(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이들 명부에는 예비검속자들의 과거 경력, 이른바 개인별 범죄개요나 좌익단체 소속 및 지위 등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도 보도연맹(원) 가입여부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예비검속자명부」의 ‘범죄개요’ 항목에는 과거 인민위원회나 제주4·3사건 관련 활동 내용이 대부분이며, 보도연맹(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경찰은 예비검속자들을 보도연맹원으로 분류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육지와 다른 제주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1950년 6월 25일 직후 제주지역에서 예비검속과 관련된 경찰 공문서에 보도연맹(원)에 대한 기술이나 언급이 거의 없다는 점은 당시 제주경찰이 예비검속을 육지의 보도연맹과는 다른 차원에서 파악하고 분류했음을 시사한다. 중요한 사실은 제주지역에서 예비검속 대상자들이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름으로 범주화되어 있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내용이나 성격상, 제주4·3사건에 관련된 활동은 육지의 보도연맹원 경력과 큰 차이가 없지만, 제주지역에서는 예비검속자 대상자들을 보도연맹원으로 범주화하여 구금하지 않았던 것이다. 일부에서 제주지역 예비검속자들을 보도연맹원으로 판단한 것은 한국전쟁 직후 전국 경찰에서 보도연맹원들을 집단 구금하여 살해한 사실을 제주도 상황에 적용하여 일반화시킨 것이었다.

제주지역 예비검속 대상자의 성격은 넓은 의미에서 ‘요시찰인’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주화는 물론 경찰의 기준과 명명에 따른 것이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내무부 치안국은 제주도경찰국을 비롯한 전국 경찰에 비상통첩을 발송, “요시찰인 전원을 경찰에서 구금”하라고 지시하였다.²⁰⁵⁾ 전쟁 직후 예비검속 대상자들은 “6·25 발생 이래 지시에 의거 중요한 사찰대상 인물을 예비검속”, “당

202)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査 제1799호, 6월 25일 14:50),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203)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幕署査 제3107호, 모슬포경찰서장, 제주도경찰국장 좌하, 1950.9.4), 첨부 자료,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204) 『형살(총살)자 및 가족명부』(서귀, 2905), 1968.

205)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査 제1799호, 6월 25일 14:50),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국 관내 요시찰인 중 820명을 예비검속”, 또는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했다는 표현과 같이 경찰의 “요시찰인”이자 주요한 사찰대상이었다.²⁰⁶⁾

제주지역 경찰은 전쟁 발발 이전부터 4·3사건 관련자를 대상으로 요시찰인 명부, 자수자·귀순자 명부, 도피자 명부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 왔으며,²⁰⁷⁾ 이는 전쟁 후 예비검속의 주요 근거자료가 되었다. 실제로 제주경찰국은 관내 경찰서에 예비검속을 실시하고 예비검속자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거 4·3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 제주경찰서의 경우, “이재민 중 4·3사건 관련자 취급의 건의 명(命) 통첩 취지에 의거”하여, 과거 4·3사건 관련자들의 죄상을 재조사하여 예비검속하고 검속자 명부를 제출하였다. 이 때 예비검속되어 입감된 대상자들의 “범죄개요”는 주로 과거 4·3사건으로 복역한 사람들이었다.²⁰⁸⁾ 제주지역 경찰이 치안국의 지시에 따라 예비검속한 사람들은 주로 경찰의 사찰대상자였으며, 과거 제주4·3사건 등에 관련된 요시찰인, 이른바 ‘불순분자’였다.

경찰은 구속된 예비검속자들을 “요시찰인 급 불순분자”로 규정하거나²⁰⁹⁾, “유해인물”로 분류하였다.²¹⁰⁾ 제주지구 계엄사령부도 예비검속자들을 “불순분자”로 인식하고 있었다.²¹¹⁾ 또한 사건 당시 해병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예비검속 대상자들을 대체로 “좌익사상을 가진 민간인 빨갱이”²¹²⁾, “국가관이나 사상이 불순한 사람”²¹³⁾, “4·3사건으로 인해서 사상적으로 불순한 사람들, 한라산에 공비로 활

206) 「예비검속자 처리의 건」(濟警査 제6670호, 1950.10.26) ; 「불순분자 검거의 건-대 7월 1일 암호전보 제19호」(제호 1945호, 1950.8.4. 입안) ;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제호 1950.8.6. 입안) ;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査 제17995호, 6월 25일 14:50) ; 「요시찰인 검거 구속자 명부 제출의 건」(城署査 제1809호, 1950.6.30),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207) 김OO 증언(2006.9.20) ; 고OO 증언(2006.9.22) ; 김OO 증언(2007.6.21) ; 「도피자명부 작성에 관한 건-대 10월 13일부 濟警査 1840호」(제2구 警査 제247호, 1948.10.28),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208) 「전 제주지구 예비검속자 명부제출의 건」(濟警査 제2899호의 5, 제주경찰서장 총경 유근익, 제주도경찰국장 좌하, 1950.7.12),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209) 「보호구속자 급식에 관한 건」(城署査 제1840호, 1950.7.1),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210) 서귀포경찰서 연리출장소, 「형살자명부-좌익계열실태조사표(其二)」, 1951년 6월,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211) 「불순분자 구속 세부지시에 관한 건」(南濟戒發 제6호, 1950.7.8),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212) 문OO 증언(2010.3.6).

213) 락OO 증언(2010.3.26).

동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²¹⁴⁾ 등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제주지역 군경당국은 대체로 예비검속 대상자들을 대체적으로 요시찰인 또는 불순분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군경당국이 예비검속자들을 일반적 의미에서 요시찰인, 불순분자로 범주화하였지만, 이들의 경력이나 성향은 예비검속자 명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1950년 9월 4일 제주경찰서가 작성한 ‘예비검속자 명부’에는 개인별 과거 경력이나 활동을 기록한 이른바 ‘범죄개요’ 항목이 있다.²¹⁵⁾ 여기에는 예비검속자들의 과거 경력이나 단체 활동, 가족관계 등을 기술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표 3> 과 같다.

<표 3> 예비검속자 명부 중 ‘범죄개요’(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소속 및 경력	인민위원회 간부, 남로당원, 부녀동맹원, 농민위원, 민청원, 민애청원, 인민자위대원
활동내용	3·1사건 참여, 시위, 지하공작, 5.10선거 반대, 도로차단, 한라산 입산과 무장대 참여, 경찰관 불법체포와 감금, 총기탈취, 유언비어와 삐라살포, 백지날인, 금품이나 식량제공
가족관계 및 출신배경	4·3관련으로 월북한 가족, 도피자 가족, 총살자 가족, 포로석방자 가족, 출옥자·복역자 가족
개인적 성향 및 태도	군경에 반감 및 반관·반정부적 태도, 확고한 사상을 표현치 않는 중간적 태도, 반성한 듯 하나 반관적 태도, 제반사에 협력하는 듯 하나 동향 극히 애매, 확고한 사상을 표현치 않고 중간적 태도

※ 출처 : 「예비검속자 명부 제출의 건」(濟署査 제3107호, 제주경찰서장 총경 유근억, 제주도경찰국장 좌하, 1950.9.5)²¹⁶⁾

214) 김OO 증언(2010.3.6) ; 안OO 증언(2010.4.14).

215) 예비검속자 명부 제출의 건」(西署査 제2016호, 서귀포경찰서장 김호겸, 제주도경찰국장 귀하, 1950.9.4) ; 「예비검속자 명부제출의 건」(濟署査 제3107호, 제주경찰서장 총경 유근억, 제주도경찰국장 좌하, 1950.9.5),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216)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경찰이 기술한 예비검속자들의 특징을 요약하면, ① 소속(단체)=좌익관련 단체에 가입, ② 활동=사회운동 또는 반정부 활동 참여, ③ 가족배경=도피자나 석방자, 총살자 가족, ④ 태도=반정부 또는 중간적 태도로 정리된다. 이러한 특징은 물론 경찰의 기준이다. 전체적으로 제주지역 경찰은 해방직후 인민위원회 활동부터 1947년 3·1사건, 1948년 5·10 선거반대, 그리고 한라산 무장대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이나 반정부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 가족을 요시찰인으로 규정하고 예비검속의 대상으로 등록, 분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제주에서 예비검속자들은 크게 4·3사건과 관련된 사람들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러한 예비검속 대상자들의 특징은 중요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곧 한국전쟁 발발 직후 발생한 예비검속사건이 4·3사건의 시기적·공간적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제주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들은 한국전쟁 발발직후의 예비검속을 재검속, 제2검속, 2차 검속 등으로 표현하였다.²¹⁷⁾ 피해 유족 오동식은 “4·3사건 계엄령 때 모조리 불러서 총살시키고, 죄가 가벼워 남은 사람은 6·25가 나자 제2검속 당시 다 불러서 총살시켰다”고 증언하였다.²¹⁸⁾ 이들에게 재검속, 2차 검속의 의미는 과거 4·3사건 검속에 뒤이어 일어난 두 번째 검속이라는 뜻이었다. 이는 피해자 유족들도 예비검속사건을 제주4·3사건의 연장이자, 연속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군경당국이 제주4·3사건 관련자들을 요시찰인이나 불순분자로 묶고, 결국에는 예비검속 대상으로 분류한 정책은 객관적인 기준도 없고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비록 주민 가운데 본인이나 가족이 4·3사건과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경력을 문제삼아 불순분자로 규정하고 예비검속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조치였다. 예비검속자 가운데 4·3사건과 관련된 경우는 대개 생존을 위해 도피 입산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귀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예비검속과 집단살해는 자기 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정책의 표현이었다. 곧 정부나 군경당국이 제주4·3사건과 관련된 귀순자·석방자에 대해 신원을 보증하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하였음에도

217) 진용성 증언(2000.12.16) ; 양지규 증언(2001.7.5) ; 유성문 증언(2001.8.14) ; 한근섭 증언(2001.10.11) ; 김남백 증언(2002.6.18) ; 김여수 증언(2002.7.11).

218) 오동식 증언(2002.6.20).

불구하고 다시 예비검속 대상자로 분류하여 집단살해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정책이었다.

특히 경찰의 예비검속 대상자에는 제주4·3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사람, 곧 과거 출옥자·복역자 가족, 총살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바로 4·3사건과 관련된 혐의가 없음에도, “동향이 애매”하거나 과거의 수감 경력 때문에 예비검속자 명부에 포함되기도 했다.²¹⁹⁾ 일부 증언에 따르면, 총살된 예비검속 대상자에 “한라산에 공비로 활동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이나 “좌익분자 가족”이 포함되었다.²²⁰⁾ 이는 일부 민간인들이 단순히 좌익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예비검속 대상자에 포함되어 살해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인 동시에, 경찰이 예비검속자 집단살해에서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연좌제를 적용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예비검속 피해자 가운데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고하게 희생된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 일부 피해유족들은 경찰이 마을별로 몇 명씩 검속 인원이 할당하고, 정원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갔다고 증언하였다.²²¹⁾ 또한 일부 증언자들은 예비검속의 이유를 경찰(군)·서청·경찰 협조자의 무고나 모략 등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었다고 증언하였다.²²²⁾ 예를 들어 경찰 출신 강OO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예비검속자들 중, 경찰의 미움으로 잡혀간 사람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개인감정으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열 사람의 친구보다 한 사람의 원수가 무서운 겁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²²³⁾

219) 「예비검속자 명부제출의 건」(濟署査 제3107호, 제주경찰서장 총경 유근억, 제주도경찰국장 좌하, 1950.9.5),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220) 김OO 증언(2010.3.6) ; 박OO 증언(2010.3.5).

221) 강위진 증언(2009.8.24) ; 강기택 증언(2009.8.24).

222) 조천면 조천리에서 예비검속되었다가 석방된 김민택은 조천지서 협조원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자신을 연행해 갔으며,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기 전, 경찰의 예비검속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김민택 증언(2009.7.10) ; 양봉천 증언(2009.5.26) ; 고창남 증언(2009.5.22) ; 강완철 증언(2009.4.17) ; 김인실 증언(2009.4.17) ; 고옥춘 증언(2009.10.26) ; 오경대 증언(2009.4.14) ; 허병욱 증언(2009.4.15) ; 백기현 증언(2008.8.6) ; 이봉현 증언(2008.6.12) ; 현광하 증언(2006.11.6) ; 현관하 증언(2008.8.6) ; 현병휴 증언(2009.8.19) ; 강석훈 증언(2009.8.19) ; 김향환 증언(2009.8.20) ; 송중진 증언(2009.8.21) ; 김봉익 증언(2009.8.25) ; 문국부 증언(2009.10.28) ; 김성수 증언(2010.1.25) ; 김창희 증언(2010.1.25) ; 강창길 증언(2010.2.26).

223) 강OO 증언(2007.4.20).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인 좌옥윤은 “당시는 동네 누군가가 사상이 온전치 못하다고 손가락질만 하면 검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잡아가는 무법천지”였다고 증언하였다.²²⁴⁾ 특히 예비검속 대상자 중에는 서청에 의한 모략으로 희생된 경우가 많았다. 다음은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인 진이일의 증언이다.

“남편과 나는 일본에서 살다가 해방 후에 제주로 왔습니다. 남편은 한림중학교 수학교수로 있었는데 남편은 그 전엔 한번도 토벌대에게 불려간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북에서 온 선생(서청 정보원 교사)들이 남편을 ‘빨갱이’로 몰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북선생들이 대거 들어와 전체 교사 중 절반 이상이 됐었습니다.”²²⁵⁾

이처럼 예비검속자 희생자 가운데는 무고나 모략과 같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보복심 때문에 희생된 경우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제주지역 예비검속과 집단학살 전체의 배경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제주지역 예비검속자 집단살해는 내무부 치안국과 계엄사령부로 대표되는 정부의 정책과 지시속에서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작성한 예비검속자 분류기준에서도 군경당국의 집단살해 배경,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가해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예비검속 이유는 경찰이 작성한 「예비검속자명부」의 ‘범죄개요’에 기술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해방 후 인민위원회 활동에서부터 1947년 3·1사건, 1948년 2·7사건, 5·10 선거반대, 한라산 입산에 이르기까지 크게 4·3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여기에서 군경의 가해이유, 곧 예비검속과 집단살해의 이유는 주로 4·3사건 관련 내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제주 예비검속사건이 갖는 국가폭력의 의도성과 계획성을 일정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비검속사건은 한국전쟁 이전 정부와 군경당국의 대대적인 진압작전으로 한라산 무장세력이 소멸되고 생존을 위해 입산했던 사람들도 귀순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고 살고 있는 조건과 한국전쟁이라는 전쟁상황이 상호 결합하면서 발생하였다. 여기에서 국가권력이 갖는 야만적 성격과 폭력성이 몇 가지 지점에서 드러난다. 첫째는 국가가 과거 4·3사건으로 한라산에 입산하거나 귀순한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국민으로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비

224) 좌옥윤 증언(2002.2.27).

225) 진이일 증언(2001.12.25).

국민으로 분류하여 요시찰인, 불순분자로 감시했다는 점이다. 국가는 과거 4·3 사건과 관련된 국민은 여전히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의심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둘째는 국가는 전쟁이 일어나자, 예비검속자들을 불순분자, 곧 적의 국민으로 분류하여 집단 살해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전쟁상황에서 나타난 국가의 본래 모습이자 실제였다. 국가입장에서 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 불순분자로 분류한 예비검속자들이었다.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예비검속자들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고 죽여도 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가폭력의 야만적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

예비검속사건에서 나타난 국가폭력은 단순한 야만성만이 아니라 계획성과 의도성을 갖고 있다. 사실 제주4·3사건과 예비검속사건의 인적 관계를 고려할 때, 예비검속 대상자들은 4·3사건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었다가 살아남은 마지막 집단이었다. 정부와 군경당국 입장에서 예비검속사건은 바로 4·3사건에서 살아남은 잔여세력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경찰 출신 정OO는 정부는 1950년 6·25 발발 후, 한라산 무장대를 모두 토벌하지 못하자, 예비검속을 구상하였다고 증언하였다.²²⁶⁾ 예비검속 사건은 제주지역 공동체에서 4·3사건과 관련된 개인과 사회집단의 완전한 절멸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폭력의 의도성, 계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주 예비검속사건에서 나타나는 국가폭력의 의도성과 계획성은 지역사회 유지나 지식인층에 대한 예비검속에서도 드러난다. 경찰은 예비검속을 실시하면서 ‘요시찰인 중 특히 의식계급으로서 사찰대상이 된 자를 우선 구속’하라는 치안국 및 제주도경찰국의 지시를 실행에 옮겼다.²²⁷⁾ 모슬포경찰서는 이 지시에 의거, 대정지서 관내 보성초등학교 교원 4명 전원을 “동향이 극히 애매”하다는 이유로 불순교원으로 규정하여 검거하였다.²²⁸⁾ 이는 예비검속이 사회유지 또는 지식인층의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유족 증언에서도 많이 확인되는 내용

226) 정OO 증언(2007.8.16).

227)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査 제1799호, 6월 25일 14:50) ; 「학교 교직원 및 공산 제5열 협의자 일제 검거에 관한 건」(幕署査 제2942호, 1950.7.30),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228) 「불순교원 일제검거와 학교운영에 관한 건」(幕署査 제2973호, 모슬포경찰서장, 제주도경찰국장 좌하, 1950.8.3),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제주경찰국 및 제주서귀포·성산포·모슬포경찰서, 1950~1956), 국가기록원.

이다.²²⁹⁾ 피해 유족들 중에는 예비검속자들이 교사·공무원 등 사회 지도층이나 유지,²³⁰⁾ 그리고 마을에서 똑똑한 젊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검속되었다고 증언하는 경우도 많았다.²³¹⁾ 지역사회 지도층에 대한 예비검속과 살해는 사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공동체 자체의 존립이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조치였다.

전체적으로 제주 예비검속사건은 국가입장에서 4·3사건과 관련된 개인과 집단의 제거만이 아니라 4·3사건과 관련된 지역 공동체의 파괴를 목표로 한 사건이었다. 예비검속자 집단살해는 단순히 인간생명의 물리적 제거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4·3사건과 관련된 공동체의 삶과 가치, 그리고 역사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 예비검속사건은 국가폭력의 의도성과 계획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적 제노사이드(politicide)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집단학살의 규모와 분포

제주 예비검속사건의 전체 희생자 규모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처음에 희생자 규모에 대해서는 주로 피해유족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숫자가 제시되었다. 먼저 제주시 지역의 경우, 유족들은 예비검속 희생자 규모를 1,000여명으로 추정하였으며,²³²⁾ 이들 가운데 실제 확인한 명단은 138명이었다.²³³⁾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증언 및 자료에 의해 희생규모를 500여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²³⁴⁾ 제주4·3위원회에 신고된 예비검속 희생자 수는 127명이었다.²³⁵⁾ 이처럼 제주시 예비검속사건 관련 희생자는

229) 고OO 증언(2007.4.19) ; 고OO 증언(2006.9.22).

230) 김익수 증언(2009.6.27) ; 현수열 증언(2010.4.13) ; 홍성효 증언(2009.8.19) ; 김석중 증언(2009.8.21) ; 강능수 증언(2009.8.24).

231) 김경용 증언(2009.10.26) ; 김정자 증언(2006.6.28)(2009.7.6) ; 김이선 증언(2009.7.7) ; 김신배 증언(2009.7.7) ; 이봉문 증언(2009.8.19) ; 고아여 증언(2009.8.20) ; 박정찬 증언(2009.8.20).

232) 제주북부예비검속희생자유족회, 2005, 「예비검속희생자위령비건수기」 참조.

233) 제주북부예비검속희생자유족회는 138명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북부예비검속희생자유족회 합동 위령제 팸플릿(2012) 참조.

234)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는 제주시 지역 예비검속 희생 규모를 수장 500여명 이상, 정뜨르비행장 총살 수백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430~43쪽.

1,000여명으로 추산되지만,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 들어 국가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가 예비검속사건을 공식 조사하면서 실제 희생자 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제주지역 예비검속사건의 조사결과에서 희생사실을 확인한 희생자는 117명이라고 발표하였다.²³⁶⁾ 희생자로 확인된 117명의 연령별·성별·직업별·읍면별 분포 상황은 아래 <표 4>·<표 5>·<표 6>·<표 7>과 같다.

제주시 지역 예비검속사건 희생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전체 117명 가운데 20대와 30대가 90명으로 76.9%를 차지하였다. 이는 제주4·3사건 등의 영향으로 가장 활동적인 청년세대가 예비검속의 주요한 대상이었음을 의미한다.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가 94%로 희생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교원·공무원·의사 등 사회 지도층 인물이 18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 분포는 사건 지역인 3개 읍·면 가운데 제주읍에서 50명, 애월면에서 46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여 전체 희생자의 82%를 차지하였다. 이는 제주읍과 애월면이 상대적으로 지역도 넓고 인구가 많았던 점에 기인한다.²³⁷⁾ 또한, 제주4·3사건 당시 제주읍은 애월면·조천면에 비해 희생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지역으로,²³⁸⁾ 4·3사건 희생자가 많은 지역에서 예비검속 희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제주시 지역 희생자의 연령별 분포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희생자(수)	5	60	30	16	6	117
비율(%)	4.3	51.3	25.6	13.7	5.1	100

235) 제주4·3위원회에 신고된 예비검속 희생자 수는 행방불명되었거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파악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주시 지역의 경우, 제주읍 45명, 조천면 30명, 애월면 52명으로 확인된다. 제주대학교·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 앞의 책 참조.

236) 진실화해위원회, 『제주예비검속사건(제주시·서귀포시) 진실규명결정서』(2010) 참조.

237) 사건 당시 제주읍은 25개리, 애월면은 19개리, 조천면은 10개리로 구성되었다.

238) 4·3위원회에 신고된 마을별(본적지 기준) 4·3사건 희생자 수를 보면, 제주읍은 3,927명, 애월면은 1,549명, 조천면은 1,824명으로 확인된다(2012.5.15. 제주도청 제주4·3사업소 통계 기준).

〈표 5〉 제주시 지역 희생자의 성별 분포

성별	남	여	계
희생자(수)	110	7	117
비율(%)	94	6	100

〈표 6〉 제주시 지역 희생자의 직업별 분포

직업명	교원	공무원	법원서기	의사	기자	사무원	학생	상업	스님	목수	기술직	이장(농축어업)	주부(농축어업)	농축어업	기타	계
희생자(수)	8	2	1	2	1	3	10	2	1	2	3	4	7	65	6	117
비율(%)	6.8	1.7	0.9	1.7	0.9	2.6	8.5	1.7	0.9	1.7	2.6	3.4	5.9	55.6	5.1	100

〈표 7〉 제주시 지역 희생자의 읍면별 분포*

지역명	제주읍	조천면	애월면	계
희생자(수)	50	21	46	117
비율(%)	42.7	18.0	39.3	100

* 희생자의 읍면별 구분은 본적지를 기준으로 함

모슬포 지역 예비검속사건의 경우, 사건관련 유족들이 1956년 당시 희생자 유해를 직접 수습했기 때문에 유해 숫자와 희생규모가 대체로 일치한다는 증언을 하고 있지만, 수습된 유해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다.²³⁹⁾ 관련 증언에 따르면, 1956년 수습된 유해 숫자는 최소 194구 최대 212구로 추정된다.²⁴⁰⁾ 진실화해위원회는 모슬포 지역 예비검속사건을 조사하면서 경찰 공문서 등을 바탕으로 총 344명이 예비검속되었고, 이 가운데 군 당국에 송치(인계)되어 희생된 인원은

239) 김순열 증언(2006.6.21) ; 신태업 증언(2006.5.25) ; 이정선 증언(2006.6.9) ; 조철호 증언(2006.6.23) ; 김인옥 증언(2006.6.27) ; 임충구 증언(2006.5.26) ; 김정자 증언(2006.6.28) ; 양병익 증언(2006.5.24) ; 양상선 증언(2006.5.25) ; 김창부 증언(2006.5.24) ; 김용하 증언(2006.6.27).

240)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한림 어업조합장고 수감 희생자 유해 61구, 모슬포 절간고구마창고 수감 희생자 유해 132구를 수습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432~433쪽.

249명으로 판단하였다.²⁴¹⁾ 다만, 249명 중에서 희생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희생규모는 218명이며, 희생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희생자 수는 16명으로 정리하였다. 모슬포 지역에서 신원이 확정된 희생자 218명의 연령별·성별·직업별·읍면별 분포 상황은 아래 <표 8>·<표 9>·<표 10>·<표 11> 과 같다.

먼저 사건 희생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전체 218명 가운데, 20~30대가 168명으로 77.1%를 차지하였다. 이는 모슬포 지역 역시, 제주4·3사건 등의 영향으로 가장 활동적인 청년세대가 예비검속의 주요한 대상이었음을 의미한다.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가 96%로 희생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역별 분포는 사건 지역인 한림면·대정면·안덕면 가운데 한림면에서 전체 58%에 해당하는 126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한림면이 상대적으로 지역도 넓고 인구가 많았던 점에 기인한다.²⁴²⁾ 또한, 4·3사건 당시 한림면은 대정면·안덕면에 비해 희생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지역으로,²⁴³⁾ 4·3사건 희생자가 많은 지역에서 예비검속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표 8> 모슬포 지역 희생자의 연령별 분포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희생자(수)	20	107	61	22	8	218
비율(%)	9.2	49.1	28	10.1	3.6	100

<표 9> 모슬포 지역 희생자의 성별 분포

성별	남	여	계
희생자(수)	208	10	218
비율(%)	95.4	4.6	100

241) 진실화해위원회, 『제주예비검속사건(첫알오름) 진실규명결정서』(2007) 참조.

242) 사건 당시 한림면은 26개리, 안덕면은 10개리, 대정면은 13개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243) 4·3위원회에 신고된 마을별(본적지 기준) 4·3사건 희생자 수를 보면, 한림면은 1,029명, 안덕면은 666명, 대정면은 616명으로 확인된다.(2012.5.15, 제주도청 제주4·3사업소 통계 기준).

〈표 10〉 모슬포 지역 희생자의 직업별 분포

직업명	교원	공무원	의사	회사원	사무직	기술직	학생	상업	농·축·어업	이장(농·축·어업)	주부(농·축·어업)	목수	선원	기타	모름	계
희생자(수)	19	7	1	2	1	3	7	4	121	6	3	6	1	4	33	218
비율(%)	8.7	3.2	0.5	0.9	0.5	1.4	3.2	1.8	55.5	2.8	1.4	2.8	0.5	1.8	15	100

〈표 11〉 모슬포 지역 희생자의 읍면별 분포*

지역명	한림면	대정면	안덕면	기타**	계
희생자(수)	126	54	25	13	218
비율(%)	57.8	24.8	11.5	5.9	100

※ 희생자의 읍면별 구분은 본적지를 기준으로 함

※ 기타지역 : 희생자의 본적지가 애월면·중문면·제주읍으로 확인된 경우임

서귀포 지역 예비검속사건의 경우, 사건 관련 유족들은 서귀포경찰서 관내 예비검속 희생자 규모를 150~3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유족회가 확인한 희생자는 85명이다.²⁴⁴⁾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증언 및 자료에 의해 희생규모를 170여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제주4·3위원회에 신고된 서귀포 지역 예비검속 희생자 수는 85명이다.²⁴⁵⁾

전체적으로 서귀포 지역 예비검속사건 관련 희생자는 최소 150여명, 최대 300여명으로 추산되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서귀포시 예비검속사건의 조사결과에서 희생사실을 확인한 희생자는 78명이라고 발표하였다.²⁴⁶⁾ 희생자로 확인된 78명의 연령별·성별·직업별·읍면별 분포 상황은 아래 〈표 12〉·〈표 13〉·〈표 14〉·〈표 15〉와 같다.

244) 6·25예비검속희생자삼면유족회는 2012년 10월 현재 85명의 희생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 「제62주기(제12회) 삼면원혼합동위령제」 팸플릿(2012) 참조.

245) 남원면 23명, 서귀면 19명, 중문면 43명이다. 제주4·3위원회에 신고된 예비검속 희생자 수치 역시, 신고서에 행방불명되었거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파악한 것이므로 실제 예비검속 희생자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주대학교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 앞의 책 참조.

246) 진실화해위원회, 『제주예비검속사건(제주시·서귀포시) 진실규명결정서』(2010) 참조.

먼저 사건 희생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전체 78명 가운데, 20~30대가 65명으로 83.3%를 차지하였다. 이는 서귀포 지역 역시, 제주4·3사건 등의 영향으로 가장 활동적인 청년세대가 예비검속의 주요한 대상이었음을 의미한다.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가 98.7%로 희생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역별 분포는 사건 지역인 서귀면·중문면·남원면 가운데 중문면에서 전체 52.6%에 해당하는 41명의 희생자가, 남원면에서 28.2%에 해당하는 22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사건 당시 세 지역의 규모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²⁴⁷⁾ 4·3사건 당시 희생자 수는 서귀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문면·남원면이 많았던 점과 일치함을 보여준다.²⁴⁸⁾

〈표 12〉 서귀포 지역 희생자의 연령별 분포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희생자(수)	6	37	28	3	4	78
비율(%)	7.7	47.4	35.9	3.9	5.1	100

〈표 13〉 서귀포 지역 희생자의 성별 분포

성별	남	여	계
희생자(수)	77	1	78
비율(%)	98.7	1.3	100

〈표 14〉 서귀포 지역 희생자의 직업별 분포

직업명	교원	공무원	사무직원	이장 (농축어업)	면장	학생	상업	농축어업	주부 (농축어업)	모름	계
희생자(수)	5	1	2	2	1	1	2	61	1	2	78
비율(%)	6.4	1.3	2.6	2.6	1.3	1.3	2.6	78	1.3	2.6	100

247) 사건 당시 서귀면과 중문면은 11개리, 남원면은 8개리로 구성되었다.

248) 4·3위원회에 신고된 마을별(본적지 기준) 4·3사건 희생자 수를 보면, 중문면은 722명, 서귀면은 570명, 남원면은 950명으로 확인된다.(2012.5.15, 제주도청 제주4·3사업소 통계 기준).

〈표 15〉 서귀포 지역 희생자의 읍면별 분포*

지역명	남원면	서귀면	중문면	계
희생자(수)	22	15	41	78
비율(%)	28.2	19.2	52.6	100

※ 희생자의 읍면별 구분은 본적지를 기준으로 함

V. 결론

제주지역 예비검속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시기에 발생했던 대규모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시기 대부분의 민간인 집단학살사건은 군경당국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가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식문서가 남아있지 않아 사건의 전체상을 규명하고 복원하는데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비해 제주지역 예비검속사건은 당시 경찰의 관련 공문서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제주지역 예비검속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내무부 치안국의 지시를 받은 제주경찰국·경찰서·지서가 주체가 되어 각 읍·면별로 대상자들을 연행하여 수용하고 분류한 다음에 집단살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경찰은 예비검속자 연행과 수용, 감시과정에서 대한청년단, 서북청년단을 비롯한 우익단체를 동원하기도 했다. 당시 계엄령 하에서 군이 경찰업무를 감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비검속자 집단살해의 최종 결정권은 제주주둔 해병대사령부에 있었다.

제주 예비검속사건의 구조, 곧 발생배경과 과정, 결과는 한국전쟁 직후 민간인 학살사건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곧 제주지역 예비검속사건에서 나타나는 민간인 학살의 프레임은 육지에서 발생한 학살사건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 예비검속사건은 정부 - 군 - 경찰로 이어지는 지휘명령 계통 아래에서 민간인 학살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자행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육지의 경우, 비록 관련 공식기록이 풍부하지 않아 민간인학살의 전체 구조와 과정을 복원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관련 증언을 볼 때, 제주 예비검속사건과 동일한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제주 예비검속사건이 제주지역만의 개별적인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전국적 보편성을 갖는 구조적 사건임을 말해 준다. 제주지역 예비검속사건의 경찰문서에서 나타나는 사건구조는 바로 육지 민간인 학살사건과 동일한 대쌍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제주지역 예비검속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예비검속사건과 공통성을 지니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지역적 특성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제주지역 예비검속사건은 육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학살사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성격을 갖고 있다. 곧 예비검속의 주체가 주로 경찰인 점, 집단살해의 전 단계 및 사전조치로 예비검속이 실시된 점, 집단학살의 과정이 연행과 수용, 그리고 총살로 연결된 점, 예비검속의 대상자들이 주로 과거 좌익과 관련 있거나, 좌익으로 의심받은 사람들이었던 점 등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제주지역 예비검속사건은 한편으로 육지와는 다른 지역적 특성도 보여주고 있다. 제주지역 예비검속사건은 첫째로 예비검속 대상자가 주로 과거 4·3사건 관련자나 그와 관계있는 사람들로 범주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육지에서 예비검속 대상자가 주로 국민보도연맹원으로 집중되어 있는 점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물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민보도연맹원과 4·3사건 관련자들이 과거 좌익조직 또는 사회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지역에서 예비검속사건 대상자들이 대부분 4·3사건 관련자로 범주화·집중화된 것은 의미있는 몇 가지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곧 제주에서는 육지와는 달리 한국전쟁 발발 직후 보도연맹 가입여부가 예비검속의 일차적 기준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예비검속의 대상이 과거 4·3사건 관련자로 통일된 것은, 제주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사상과 정체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4·3사건 관련여부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둘째로 제주지역 예비검속사건은 육지의 민간인 집단살해 과정과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육지에서 예비검속된 국민보도연맹원들이 대체로 집단살해되는 것에 비해, 제주에서는 수용-심사-분류를 거쳐 살해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기 구금·수용되거나 나중에는 석방되는 경우도 많았다. 나아가 군-검찰-경찰 등 예비검속과 집단살해를 주도한 국가기관 내부에서 예비검속의 적법성이나 권한을 놓고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성산포경찰서는 예비검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군 당국의 지시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구금된 민간인들을 석방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사회 전체에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당시 예비검속을 실행한 가해기관들의 일정한 독자성·자율성을 보여주는 지점이

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주도는 육지와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된 후방 지역사회의 특성을 갖고 있었다. 당시 정부의 민간인 학살이나 좌익관련 정책도 처음부터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전쟁상황과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제주도 군경당국도 전황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조절되는 상황속에서 중앙의 방침을 전면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일정한 자율성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셋째로 제주 예비검속사건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주민 상호간의 밀고나 고발이다. 예비검속 대상자들 가운데는 무고나 중상모략에 의한 밀고로 연행되어 희생된 경우가 많았다. 이는 무엇보다 4·3사건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 내부의 이념대립과 갈등이 전쟁이라는 공간속에서 개인적 복수로 표면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결국 제주 예비검속사건은 한편으로 지역사회 내부의 또 다른 전쟁이었다. 곧 예비검속사건은 크게 보면 국가 대 개인의 전쟁이었지만, 마을 단위에서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전쟁도 포함되어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4·3사건이 오랜 기간 계속되면서 마을 공동체 내부의 질서가 붕괴하고 개인이 파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로 제주 예비검속 사건에서 나타나는 희생자 특징은 몇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먼저 희생자 연령과 남녀비율에서는 제주 모든 지역에서 20~30대 남성층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4·3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활동적인 청년세대가 예비검속과 집단살해의 주요한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 지역적으로 희생규모가 많은 곳은 제주시 지역에서는 제주읍과 애월면, 모슬포에서는 한림면, 서귀포에서는 중문면이었다.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4·3사건의 희생자가 많은 지역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예비검속사건이 4·3사건의 연장선인 동시에, 4·3으로 대표되는 저항운동이 희생과 상호 결합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1950년 제주지역 예비검속사건은 4·3사건과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4·3사건의 시간적·공간적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제주 예비검속사건은 4·3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집단의 절멸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국가폭력의 의도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적 체노사이드(politicide)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년세대를 비롯하여 4·3사건과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의 살해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폭력이었다. 다시 말해 예비

검속자 집단살해는 단순히 인간생명의 물리적 제거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4·3사건과 관련된 공동체의 삶과 가치, 그리고 역사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참고 문헌

1.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

제주경찰국(제주·서귀포·모슬포·성산포경찰서), 1950~1956, 『예비검속 관련
경찰 공문서철』,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DA0792122.

대구교도소, 1950, 『헌병예입인명부』(제2호),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D0173420.

2. 자료집·보고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7, 『제주예비검속사건(섯알오름) 진실규명
결정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국민보도연맹사건 진실규명결정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제주예비검속사건(제주시·서귀포시)
진실규명결정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1~2002, 「제주4·3사건 증언
자료집」(1~7권, 미간행)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
고서』

제주4·3연구소, 2004~2005, 「제주4·3사건 1000인 증언채록자료집」(미간행)

제주대학교·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 2010, 『4·3희생자 유해발굴사업 2단계
1차 감식 보고서』

제주북부예비검속희생자유족회·삼면유족회·백조일손유족회·만병디유족회,
2002~2012, 「위령제 팸플릿」

3. 신문·잡지

『국도신문』·『경향신문』·『대구매일』·『독립신문』·『동아일보』·『매
일신보』·『부산일보』·『서울신문』·『시정월보』·『연합신문』·『자유신
문』·『제주신보』·『조선일보』·『한성일보』·『호남신문』·월간『말』

4. 단행본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한국전쟁사료』 제65권.
리차드 H. 미첼, 1982, 『일제의 사상통제 - 사상전향과 그 법체계』, 일지사.
미셸 푸코, 박정자 옮김, 1997,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동문선.
안진, 1996, 『미군정기 억압기구 연구』, 새길.
유사원, 1955, 『사찰경찰제요』, 백조사.
한옥신, 1975, 『사상범죄론』, 최신출판사.
해병대사령부, 1962, 『해병 전투사』 제1집 증보판.

5. 연구논문

1) 국문

- 강성현, 2005, 「전향에서 감시·동원, 그리고 학살로-국민보도연맹 조직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4호.
강성현, 2012, 『한국 사상통제기제의 역사적 형성과 ‘보도연맹 사건’, 1925-50』,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김동춘, 2002, 「20세기 국가폭력과 과거청산」, 조희연 편,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읽는책.
김동춘, 2011, 「냉전, 반공주의 질서와 한국의 전쟁정치 - 국가폭력의 행사와 법치의 한계」, 『경제와 사회』 봄호(통권 제89호).
김무용, 2010, 「정부수립 전후 시기 국민형성의 동종화와 정치학살의 담론 발전」, 『아세아연구』 제53권 4호(통권 142호).
김선호, 2002, 「국민보도연맹의 조직과 가입자」, 『역사와 현실』 제45권.
김학재, 2003, 「사상검열과 전향의 포로가 된 국민-국민보도연맹과 국가 감시체계」, 『당대비평』 27호.
오병두, 2010, 「국민보도연맹과 예비검속-제노사이드(Genocide)의 관점에서」, 『민주법학』 제43호.
장신, 2003, 「일제하의 요시찰과 『倭政時代人物史料』」, 『역사문제연구』 11호.
정병준, 2004, 「한국전쟁 초기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학살사건의 배경과 구조」, 『역사와 현실』 제54권.

- 조희연·조현연, 2002, 「국가폭력·민주주의투쟁·희생에 대한 총론적 이해」, 조희연 편,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 읽는책.
- 최호근, 2004, 「제노사이드란 무엇인가? - 제노사이드 논의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검토」, 『독일연구』 제23권 1호.
- 최호근, 2005, 「전쟁과 제노사이드」, 『역사와 경계』 제56권.
- 한지희, 1996, 「국보도연맹의 조직과 학살」, 『역사비평』 통권 37호.
- 허상수, 2004, 「국가폭력과 제주4·3항쟁」, 『한국사회학회』 제8권 1호.
- 홍성흡, 2005, 「국가폭력 연구의 최근 경향과 새로운 연구 방향의 모색」, 『민주주의와 인권』 제7권 1호.
- 황영주, 2010, 「초기근대국가 형성에서 폭력의 문제」, 『국제관계연구』 가을호 제15권 2호(통권 제29호).

2) 영문

- Bartrop Paul,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War and genocide in the Twentieth Century : A Consideration",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Vol. 4, No. 4.
- Beggan Dominic M., 2006(Dec.), "State Repression and Political Violence : Insurgency in Northern Ire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World Peace*, Vol. 23, No. 4.
- Bothe Michael, 2009, "Violence beyond the State-The International Law Approach", *A Journal on Civilisation*, Vol. 2, Issue 1.
- Fein Helen, 2000(April~June), "Civil Wars and Genocide : Paths and Circles", *Human Rights Review*.
- Harff Barbara, 2003(Feb.), "No Lessons Learned from the Holocaust? Assessing Risks of Genocide and Political Mass Murder since 1955",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7, No.1.
- Harff Barbara and Gurr Ted Robert, 1988(Sep.), "Toward Empirical Theory of Genocides and Politicides :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Cases since 1945",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2, No. 3.
- Herreros Francisco, 2006, "The Full Weight of the State' : The Logic of

- Random State-Sanctioned Violenc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3, No. 6.
- Holden Robert H., 1996(May), "Constructing the Limits of State Violence in Central America : Toward a New Research Agenda",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28, No. 2.
- Johnston Hank, 2012, "State Violence and Oppositional Protest in High-Capacity Authoritarian Regim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and Violence*, Vol. 6(1).
- Krain Matthew, 1997(June), "State-Sponsored Mass Murder : The Onset and Severity of Genocides and Politicid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1, No. 3.
- Krain Matthew, 2005(Sep.), "International Intervention and the Severity of Genocides and Politicid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9, No. 3.
- Mazower Mark, 2002, "Violence and the State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07, Issue 4.
- Nagengast Carole, 1994, "Violence, Terror, and the Crisis of the Stat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23, Issue 1.
- Praeg Leonhard, 2011, "Genocide, or the Aporia of Collective Violence", *At the Interface/Probing the Boundaries*, Vol. 75.
- Rummel R. J., 1995(Mar.), "Democracy, Power, Genocide, and Mass Murder",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9, No. 1.
- Thies Cameron G., 2006(Dec.), "Public Violence and State Building in Central America",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39, No. 10.
- Verdeja Ernesto, 2012(June), "The Political Science of Genocide : Outlines of an Emerging Research Agenda",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10, No. 2.
- Weber Max, 1948, *From Max Weber : Essays in Sociology*, Routledge.